

# 北韓 核問題：展望과 課題

第 8 回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3. 5. 12

民族統一研究院

## 序 文

세계적인 탈냉전화·탈이념화 추세속에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키는 한편, 협의·실천기구인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남북회담을 전면 거부하여 남북한관계 진전이 동결된 상황에서 지난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남북한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6월 12일까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가능성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원에서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입안에 기여하고자 1993년 5월 12일 『북한 핵문제: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 8 회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번 국내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두 편의 논문과 토론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토론내용은 발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일부 재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3. 5.

民族統一研究院  
政 策 研 究 室

# 目 次

I. 開會辭 .....	李秉龍 .....	1
II. 主題發表 .....		3
1. 北韓 核問題의 現況과 展望 .....	全星勳 .....	5
2. 北韓 核問題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	李三星 .....	49
III. 討 論 .....		81
〈附 錄〉會議 概要 .....		113

##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라는 주제로 제 8 회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發表者, 司會者, 討論者로 참여하여 주신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公私多忙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來賓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北韓이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對北韓 특별사찰 결의를 이유로 核擴散禁止條約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北韓 核問題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4월 8일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는 聲明을 발표하였으며, 5월 12일 제 1 차 對北 決議案을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美·北韓 직접 접촉을 통하여 북한이 NPT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6월 12일 NPT 탈퇴 效力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對北 經濟制裁 措置를 결의하고 점차 制裁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核武器 開發可能性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國際社會의 制裁는 韓半島 情勢를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南北韓 關係改善 및 韓半島 平和統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특별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을 수용함으로써 國際的 孤立을 탈피하며, 나아가 體制開放과 南北關係 進展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율적인 政策을 입안·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本 研究院은 북한의 핵문제가 南北韓 關係改善 및 韓半島 平和統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北韓 核問題 展開 및 解決方向에 대한 학계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실질적인 南北韓關係 進展을 위한 政策 樹立에 기여하고자 이번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北韓 核問題 解決과 南北關係 進展을 위한 참신한 政策代案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익한 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자유롭고 진지하게 高見을 교환해 주실 것을 當付드리면서 간단하나마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93. 5. 12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 秉 龍

## 主 題 發 表

● 司 會：金 達 中（延世大 教授）

● 發 表：全 星 勳（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北韓 核問題의 現況과 展望”

李 三 星（翰林大 教授）

“北韓 核問題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빈 면

# 北韓 核問題의 現況과 展望

全 星 勳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I. 머리말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무기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소련의 붕괴와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핵·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의지가 이라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통해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서<sup>1)</sup> 북한의 NPT 탈퇴선언은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제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NPT 탈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북한 핵문제의 현황

---

1)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범세계적 노력은 군비통제분야에서 커다란 결실을 맺고 있다. 1993년 1월 3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제2 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 Treaty) 체결로 미·러 양국은 2003년까지 전략핵탄두 수를 각각 현재 보유량의 1/3 수준인 3,500개와 3,000개로 감축하게 되었다. 또한 1993년 1월 14일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이 조인됨으로써 ‘빈자의 핵무기’로 불리는 화학무기를 지구상에서 추방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에는 1993년 2월 말 현재 한국을 비롯한 136개국이 서명하였다(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을 검토하고 향후 문제해결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북한 핵문제의 현황 파악을 위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안전협정에 서명하면서부터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기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전개 과정을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핵문제의 전개방향 전망은 먼저 관련당사국들의 입장을 검토한 후 협상에 의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협상타결이 가능할 경우, 핵문제 해결의 주요 변수를 파악하여 이들 변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핵사찰과 관련,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북한 핵문제의 현황

### 1. IAEA 안전협정 서명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sup>2)</sup>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고 핵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의 보유를 포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 직후인 1992년 1월 7일 한국은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으며<sup>3)</sup> 같은 날 북한도 IAEA 안전협정에

---

2) 남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타결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성훈, “南北核協商 現況과 展望,” 「統一研究論叢」, 創刊號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31~142 참조.

3) 「中央日報」, 1992년 1월 7일.

서명하고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sup>4)</sup> 1985년 12월 NPT에 가입 하였으나 후속조치인 IAEA 안전협정 서명을 지연시켜 왔던 북한은 마침내 1992년 1월 30일 안전협정에 서명하였으며<sup>5)</sup> 4월 9일 이를 비준 하였다.<sup>6)</sup> 동 안전협정에 의거하여 북한은 1992년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제 1 차 임시사찰을 수용하였고 7월 중순과 9월 초 두 차례의 임시사찰이 IAEA에 의해 추가로 실시되었다. 북한은 또한 제 2 차 임시사찰 기간중인 1992년 7월 10일 IAEA와 세부적인 사찰방식을 규정 하는 「보조약정」을 체결하였다.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 제 4 항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핵사찰을 실시할 것과 구체적인 사찰규정을 협상을 통

4)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2년 1월 8일.

5) 1992년 1월 22일 캔터(Arnold Kanter)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미국간 첫 고위급 접촉이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IAEA 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미국측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 사찰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달리 주한미군기지의 사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창림 북한 순회대사 발언, 「中央日報」, 1992년 6월 19일;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2년 6월 26일;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마이니치신문 기자회견, 「한국일보」, 1992년 10월 3일 참조. 미국 카아네기 재단의 해리슨(Selig Harrison)은 미국이 캔터·김용순 회담 이후 “당근과 채찍 정책”(carrot and stick policy)을 포기하고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북한내부의 강온파간 갈등에 무감각해지고 개혁파의 입지를 점차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Selig Harrison, “Korea at the Crossroads: Absorption, Confederation or Chaos?”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토론회, 1993년 4월 9~10일, p. 6 참조.

6) 북한이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한 후 18개월내에 IAEA와 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데에는 북한에게 부정확한 안전협정 문서를 보내 서명하도록 한 IAEA의 실수도 있다. Andrew Mack,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Summer 1991), p. 90 참조. 그러나 1987년 6월 IAEA는 정확한 문서를 다시 보냈으며 이후 18개월까지(1988년 12월) 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다.

해 만든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1992년 3월 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곧 이어 상호핵사찰 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남북한은 1992년 9월 30일까지 8차례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전체회의와 5차례의 위원접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찰대상 선정 및 사찰방법과 관련한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였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정보교환 대상 가운데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는 등 사찰규정에 대한 실질토의를 진행하였다.<sup>8)</sup>

## 2.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

국제원자력기구의 3차례 임시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미 양국은 1992년 10월 8일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남북한관계, 특히 상호핵사찰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경우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sup>9)</sup> 이에 대해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고<sup>10)</sup>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남북간 대화창구를 폐쇄하였다. 북한은 1992년 11월 6

7) 핵사찰과 관련한 남북한 입장차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전성훈, “核問題에 대한北韓의立場과非核化展望,” 「제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4~17 참조.

8) 「한국일보」, 「東亞日報」, 1992년 9월 20일.

9) 이보다 앞서 1992년 5월 31일 리스카시(Robert RisCassi) 주한미군 사령관은 星條紙와의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상호핵사찰이 주한미군 감축의 중요 전제가 된다고 언급하고 한·미간에는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2년 6월 1일.

10) 「로동신문」, 1992년 10월 13일.

일 이전으로 예정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를 거부하였으며 1992년 11월 개최 예정이던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 회의와 12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제 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무산시켰다.

북한은 이후 개최된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도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1992년 10월 14일 개최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 6차 위원접촉을 시작으로 1993년 1월 25일까지 5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위원접촉 및 1차례의 비공개 위원장접촉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상호핵사찰 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93년 1월 26일 한·미 양국은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동시에 발표하였다.<sup>11)</sup>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29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로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결상태에 빠진 모든 북남 당국 사이의 대화를 굳이 재개할 의사가 없다”<sup>12)</sup>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으로 비롯된 남북대화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사찰은 계속 실시되었다.<sup>13)</sup>

---

11) 「中央日報」, 1993년 1월 26일.

12) 「로동신문」, 1993년 1월 30일.

13) 1992년 11월 13일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은 당시 평양을 방문중이던 헤이즈(Peter Hayes)에게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면 IAEA 사찰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Peter Hayes, *Nuclear Inspections in Korea: Rough Waters Ahead?* (Berkeley, CA: Nautilus Pacific Research, November 1992), p. 1.

제 4 차 임시사찰이 1992년 11월 초에, 제 5 차 임시사찰이 12월 중순에, 그리고 제 6 차 임시사찰이 1993년 1월 하순에서 2월 초에 걸쳐 실시되었다.

6차례에 걸친 IAEA의 임시사찰 결과 북한의 핵개발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북한이 영변에 건설중인 방사화학실험실은 외부공정 80%, 내부공정 40%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공장규모의 재처리시설로서 이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배된다. 둘째,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셋째, 과거 대형사고가 났던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와 같은 유형인 북한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넷째, 북한이 제 6 차 임시사찰에서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이 진실을 은폐하고 핵무기개발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국제적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6차례의 임시사찰이 실시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의 핵능력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그러나 IAEA 사찰 이전 유일한 대북한 핵활동 감시수단이었던 첩보위성이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북한 핵시설을 방문하여 샘플을 채취·분석하고 있는 IAEA가 현재 사찰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에 대해서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으며 북한이 IAEA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90g에서부터 3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인 21~24kg에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자체 인공위성 및 정찰비행을 이용한 정보를 근거로 북한 핵능력에 대한 판단을 주도해 온 미국의 최근 공식 평가는 울시(James Wool-

sey) CIA 국장에 의해 내려진 바 있다.<sup>14)</sup> 그는 1993년 2월 24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최소한 한 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15)</sup>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울시의 평가가 미국내의 일치된 견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전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부시 행정부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으나 그렇다고 울시 CIA 국장이 증언한 것처럼 핵무기 한 개를 만들 만한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sup>16)</sup>

14) 이보다 앞서 퇴임을 앞둔 게이츠(Robert Gates) CIA 국장은 1993년 1월 13일 지난 8개월간의 IAEA 사찰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접근과 북한의 은폐기도로 인해 중요한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이 몇 달 내지 1~2년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1992년 2월 자신의 평가는 북한이 그 당시까지 최소한 1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의 예측이 사실로 판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Don Oberdorfer, “Key questions unanswered about N.K. N-program: Gates,”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4, 1993.

15) USIA Wireless Fil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March 2, 1993, p. 23. 울시가 언급한 “충분한 핵물질”(enough fissile material)이 플루토늄 생산 이전의 단순한 핵폐기물인지 아니면 진짜 플루토늄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며 울시가 “충분한 핵물질”이 플루토늄임을 확신했다면 구태여 “핵물질”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6) 1993년 3월 4일 *The U.S.A. Today*紙 주취 기자회견 발언, 「한국일보」, 1993년 3월 6일. 미국 카아네기 재단의 핵전문가인 스펙터(Leonard Spector)도 울시 국장의 발언은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것이며 자신은 북한이 핵무기 1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KBS 9뉴스 인터뷰」, 1993년 3월 17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오코노기(Masao Okonogi) 교수는 북한이 1987년부터 5MW 원자료를 가동하여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폐기물을 생산했을지라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재처리 기술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실제 사용단계에 근접했다는 주장에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Masao Okonogi,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NPT and Japan's Stand,”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주취 국제학술토론회, 1993년 4월 9~10일, p. 6 참조. 일본의 핵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이 7~2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1994~5년쯤 1~3개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7)</sup>

북한은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에서 1990년에 한 번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밝혔지만, IAEA는 북한에서 채취한 플루토늄 샘플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적어도 세 차례(1989, 1990, 1991년)에 걸쳐 최소한 148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IAEA는 제 6 차 임시사찰 기간중인 1993년 1월 말 두 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였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함으로써<sup>19)</sup> IAEA의 특별사찰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원조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1992년 12월 1일 東京에서 필자와의 인터뷰.

- 17) 「朝鮮日報」, 1993년 3월 18일. 이시영 오스트리아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이 數 kg의 플루토늄을 생산,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같은 사실이 IAEA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朝鮮日報」, 1993년 3월 7일.
- 18) Kim Hyeh-won, "P'yang agrees on IAEA examination of N-samples," *The Korea Herald*, March 6, 1993, p. 2.
- 19) 북한의 IAEA 사찰요구 거부는 그동안 북한이 표명해 온 입장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북한의 김영남 외교통장은 1992년 5월 방북중인 카이네기 재단 연구원들과의 면담에서 "IAEA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 원한다면 최초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은 시설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S. Harrison, L. Specter and J. Leonard, *Preliminary Report: Carnegie Endowment Delegation Visit to Pyongya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9, 1992, p. 2. 전인찬 당시 비엔나주재 북한대사도 같은 발언을 하였다. 「中央日報」, 1992년 5월 8일.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북한은 현재 특별사찰대상으로 지목된 시설을 포함하여 몇 곳의 시설에 대한 IAEA 관리들의 방문을 허용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1992년 11월 13일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 "관리"(official)의 "방문"(visit)과 IAEA "검사요원"(inspector)의 "사찰"(inspect)을 구분함으로써 IAEA 특별사찰을 간접적으로 거부하였고 IAEA가 미국이나 남한에 의해 이용당할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Peter Hayes, *Nuclear Inspections in Korea: Rough Waters Ahead?*, p. 3.

### 3.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결의

IAEA는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내용과 IAEA 사찰을 통한 자체 분석 결과간에 “중요한 불일치”(the significant inconsistencies)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6 차 대북한 임시사찰시 영변 핵단지내의 핵재처리 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두 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두 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은 1993년 2월 9일 동 미신고시설에 대한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하였다. 북한은 블릭스 사무총장의 특별사찰 요청을 거부하고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sup>20)</sup>과 주요국 주재대사들의 기자회견을 통하여<sup>21)</sup>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2곳의 시설은 군사시설로서 절대로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당한 조치가 강요된다면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2월 22~26일 개최된 IAEA 정기이사회 직전에(2.20~21) 최학근 원자력공업부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IAEA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IAEA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다.<sup>22)</sup> IAEA는 35개 이사국중 22개국

20) 북한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로동신문」, 1993년 2월 8일.

21) 손성필 러시아주재, 이재열 제네바주재, 박동춘 프랑스주재 북한대사 기자회견, 「朝鮮日報」, 「東亞日報」, 1993년 2월 17일.

22) IAEA 정기이사회에 북측대표로 참석한 김계관 순회대사는 1993년 2월 22일 IAEA가 제기한 보고서와 사찰 결과 사이의 「원칙적 불일치점」은 북측 기술자들과 사찰단 사이의 계산방법과 해석 및 평가에서 생긴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는 사찰단이 북한 핵설비의 구체적 운영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착오와 무성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IAEA가 사찰하겠다고 하는 2개의 장소는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군사대상으로서 불일치점과 이 군사시설 사이에는 어떠한 과학적, 법률적 관련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3년 2월 24일.

의 공동발의로 북한에 대해 3월 25일까지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sup>23)</sup> 북한은 IAEA측의 특별사찰 요구가 북한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정성을 잃고 있는 IAEA의 특별사찰 결의안을 수락할 수 없으며 주권수호를 위한 자위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북한은 IAEA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sup>25)</sup> 첫째, IAEA는 제 3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사찰할 권리가 없으며, 둘째, 핵활동과 관련이 없는 군사시설은 IAEA 안전협정에 따른 사찰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NPT 조약문이나 IAEA 안전협정에 IAEA가 제 3국의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이 없는 IAEA는 핵개발 관련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블랙스 사무총장은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개발시설 발견시에도 미국 등 IAEA 회원

23)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① 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안전협정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 요청, ②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 ③ 이를 위해 사무총장이 이미 취한 조치 (IAEA 사무총장의 대북한 특별사찰수용 공식요청)를 지지, ④ 북한당국이 IAEA의 임무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과 특별사찰을 지체없이 수용할 것을 요청, ⑤ 중요한 불일치 해소를 위해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와 추가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고 긴급하다고 결정, ⑥ IAEA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1개월내에 소집될 특별이사회에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도록 요청, ⑦ 동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IAEA 현장 및 북한과 IAEA간 체결된 안전협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강구. 「IAEA 결의안 2636호」 참조.

24) 1993년 2월 25일 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대표 연설, 「로동신문」, 1993년 2월 27일.

25) 북한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로동신문」, 1993년 2월 8일;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IAEA 특별사찰 관련 성명, 「로동신문」, 1993년 2월 20일; 북측대표단장 IAEA 이사회 연설, 「로동신문」, 1993년 2월 24일 참조.

국이 제공한 첩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sup>26)</sup> IAEA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제3국 정보에 대한 IAEA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IAEA가 핵활동과 관련없는 군사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실시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 IAEA의 특별사찰 권한을 규정한 안전협정 제73조와 제77조에 따르면 IAEA는 이제까지 제시된 자료와 설명을 통해 북한의 NPT 준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북한의 동의를 받아 미신고 장소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핵발전소와 같이 핵물질이 항상 존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특별사찰은 가능하며<sup>27)</sup> NPT나 안전협정 조약문에 군사시설이 사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결의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팀스피리트 야외기동훈련(3.9~18)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월 8일 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명의로 지난 1983년 이후 10년만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sup>28)</sup> 또한 1993년 3월 10일 김영남 외교부장 명의로 IAEA 사무총장에게 특별사찰 거부를 공식 통보하였으며 이는 곧 NPT 탈퇴선언으로 이어지게 된다.

---

26) *Arms Control Today*, vol. 21, no. 9 (November, 1991), pp. 3~6.

27) George Bunn, "Does the Non-Proliferation Treaty(NPT) requires its non-nuclear-weapon members to permit inspection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of nuclear activities that have not been reported to the IAEA?" *CISAC Working Paper* (Stanford: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Stanford University, May 1992), p. 12.

28) 「로동신문」, 1993년 3월 9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3월 24일 해제하였다.

#### 4. NPT 탈퇴선언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군사 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강요를 이유로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sup>29)</sup> 또한 북한은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고 국제적, 집단적 압력과 경제봉쇄 등의 대북한 조치도 예상되지만 어떠한 공세와 압력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0)</sup>

북한의 NPT 탈퇴선언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탈퇴성명에서 북한은 미국이 핵위협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 기구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때까지 NPT 탈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3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NPT 탈퇴 지지성명을 발표한 것<sup>31)</sup>을 제외하고는 NPT 탈퇴와 관련된 북한의 모든 의사표명은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PT 탈퇴선언 다음 날인 3월 13일 허종만 조총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경우 NPT 탈퇴를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sup>32)</sup> 이철 제네바주재 북한

---

29) 「로동신문」, 1993년 3월 13일. 1992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헤이즈(Peter Hayes)는 북한관리들로부터 만약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NPT를 탈퇴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 같은 북측의 메시지를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John Fialka, "Security Council Asked to Review North Korea,"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April 2~3, 1993.

30)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기자회견, 「조선중앙방송」, 1993년 3월 12일.

31) 「로동신문」, 1993년 3월 14일.

32) 「한국일보」, 1993년 3월 15일.

대사의 기자회견<sup>33)</sup>과 허종 유엔주재 차석대사의 기자회견<sup>34)</sup>에서는 NPT 탈퇴 번복을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건까지 제시하고 있다: ①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 중지, ②남한내 미군 핵무기와 핵기지의 완전 공개, ③북한에 대한 핵위협 해소, ④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 북한은 또한 NPT 탈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주장하였다.<sup>35)</sup>

한편 IAEA는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 수락을 거듭 요청하였지만(3월 13일과 3월 20일)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IAEA는 NPT 탈퇴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이사회를 3월 18일 개최하고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여부를 3월 31일 개최되는 특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sup>36)</sup> 북한은 핵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이 계속된다면 그에 대응한 “강력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제3국 정보를 이용해서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sup>37)</sup>

## 5.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IAEA 이사회는 1993년 4월 1일 특별사찰을 거부한 북한을 안전협정 불이행 국가로 규정,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결의

33) 「世界日報」, 1993년 3월 16일.

34) 「每日新聞」, 1993년 3월 17일; 「한겨레신문」, 1993년 3월 19일.

35) 손성필 러시아주재 북한대사 발언, 「中央日報」, 1993년 3월 31일.

36)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도 당초 3월 25일이 수용시한이었으나 동 특별이사회에서 3월 31일로 연장되었다.

37) 1993년 3월 29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1993년 3월 30일.

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IAEA의 임시사찰을 반대한 적이 없으며 NPT 탈퇴후에도 안전협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서둘러 유엔 안보리에 상정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sup>38)</sup> 또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핵안전협정 이행문제를 서둘러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것에 대응하여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39)</sup> IAEA는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중단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sup>40)</sup> 한편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1993년 4월 8일 NPT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지하며 IAEA가 건설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하였으며<sup>41)</sup> 5월 12일 제 1차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Ⅲ. 북한 핵문제의 전개방향 전망

#### 1. 관련당사국들의 입장

북한 핵문제의 관련당사국들로는 북한을 비롯한 북한이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핵사찰과 관련된 IAEA, 북한의 핵개발로 가장 직접

38)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3년 4월 6일.

39) 김광섭 비엔나주재 북한대사 기자회견, 「中央日報」, 1993년 4월 2일.

40) 블릭스(Hans Blix) 사무총장 기자회견, 「中央日報」, 1993년 4월 2일.

41) 「中央日報」, 1993년 4월 3일.

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한국,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러시아와 일본을 들 수 있다. 북한 핵문제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련당사국들의 입장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가. 북한

북한은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과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에 따른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NPT 탈퇴라는 배수진을 침으로써 핵문제를 대미협상의 마지막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NPT 탈퇴가 대미협상용이라는 분석은 NPT 탈퇴 성명 및 이후에 발표된 각종 공식 발언들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핵위협을 중지하고 IAEA가 독자성을 회복할 때까지 탈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퇴선언 며칠후부터는 각국 주재 대사들을 동원하여 NPT 탈퇴 번복을 위한 구체적 조건까지 제시하였다.<sup>42)</sup>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3월 29일 북한 외교부는 담화를 통해 NPT 탈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과 미국사이에 “서로 신뢰가 보장되고 평등과 호혜원칙에 기초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43)</sup> 또한 북한은 “이른바 핵문제는 본질상 우리와 미국사이의 문제”라고 규정하고<sup>44)</sup> 문제의 궁극적 해결여부는 북한과 미국간 협상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42) 「世界日報」, 1993년 3월 16일; 「한겨레신문」, 1993년 3월 19일.

43)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1993년 3월 29일.

44)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3년 4월 6일.

있다.<sup>45)</sup> 한편 허종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4월 19일 마이니치신문과의 회견에서 미·북한 양국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대표간 고위급 교섭이 시작될 경우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NPT 복귀와 특별사찰 수용의 조건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② 한국내 주한미군기지 사찰, ③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④ 한국에 대한 핵우산정책 포기, ⑤ 북한의 사회주의 존중.<sup>46)</sup>

IAEA의 사찰과 관련, 북한은 IAEA가 그동안 실시해 온 임시사찰은 계속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두 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월 6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반대한 것이 결코 안전협정 불이행은 아니며 NPT 탈퇴선언후에도 안전협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왔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또한 북한은 지난 3월 30일 IAEA에 안전협정과 관련된 협상을 거듭 제의

45)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1993년 4월 11일; 김완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 회견, 「한겨레신문」, 1993년 4월 18일.

46) 「毎日新聞」, 1993년 4월 21일. 이 회견에서 허종 대사는 NPT 탈퇴후 북한·미국간 北京 접촉에서 미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북측의 호소를 무시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난 4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북한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외세의존정책의 포기, 주한미군철수 의지 표명, 외국군대와외의 합동군사훈련 영구 중지, 미국의 핵우산에서 탈피. 「로동신문」, 1993년 4월 8일.

47)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3년 4월 6일.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결정이 있던 지난 4월 1일 김광섭 비엔나주재 북한대사도 IAEA 일반사찰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中央日報」, 1993년 4월 2일. 한편 최대북 로동당 국제부장도 핵사찰문제는 IAEA와 충분한 대화를 계속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한겨레신문」, 1993년 4월 6일.

한 바 있다고 하였으며<sup>48)</sup> 이는 키드(David Kyd) IAEA 대변인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다.<sup>49)</sup> 블릭스 IAEA 사무총장도 IAEA가 북한과 핵사찰문제에 대한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의 자세가 지난 3월 중순 NPT 탈퇴 때보다 적극적이라고 말하였다.<sup>50)</sup> 또한 지난 4월 19일 허종유엔주재 차석대사가 제시한 5개 조건은 북한의 NPT 복귀와 더불어 특별사찰 수용에 대한 조건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견지해 온 특별사찰 수용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 불가」 입장을 변경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나. 미국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 형성을 주도해 온 미국은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와 NPT 탈퇴선언을 범세계적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IAEA 특별사찰 수용과 NPT 복귀문제는 미국과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기본적 방침은 북한의 NPT 탈퇴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6월 중순까지 일단 외교적 노력에 의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제재를 동원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sup>51)</sup> 그러나 북한의 NPT 체제 완전 이탈이

48)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1993년 4월 11일.

49) 키드 대변인은 북한의 최학근 원자력공업부장이 3월 30일 블릭스 IAEA 사무총장에게 안전협정 이행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으나 특별사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하였다. 키드 대변인은 또한 김광섭 비엔나 주재 북한대사도 북한이 임시사찰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다고 전하였다. *The Korea Herald*, April 1, 1993.

50) 「中央日報」, 1993년 4월 15일.

51)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미 국무장관은 대북한 경제제제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을 밝히고 석유, 가스와 같은 원자재와 식량이 대북한 경제제

가져오는 파급효과(국제적 핵비확산체제에 결함 초래, 동북아지역의 불안정 야기 등)를 우려하고 있는 미국은 국제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PT 탈퇴선언 직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NPT 탈퇴결정을 번복하고 IAEA 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였다.<sup>52)</sup> 특히 클린턴(Bill Clinton)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북한의 NPT 탈퇴와 특별사찰 거부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고 북한에 대해 탈퇴결정을 재고하고 국제사찰에 응하라고 촉구하였다.<sup>53)</sup> 한편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은 1992년 12월 23일 제29차 접촉을 끝으로 중단된 미·북한간 北京 접촉을 재개하여 3월 17일과 3월 19일 북한과 두 차례의 접촉을 가졌다.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양국간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도 북한의 NPT 탈퇴선언 직후와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지난 4월 13일 미 군축국장 그레이엄(Thomas Graham, II)은 현재 미국 정부가 미·북한간 고위접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sup>54)</sup> 그레이엄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날 국무부 논평에 의해 공식 확인된 바 있다.<sup>55)</sup> 이후 미국은 5월 5일 제32차 미·북한 北

---

재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을 밝히고 석유, 가스와 같은 원자재와 식량이 대북한 경제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中央日報」, 1993년 3월 26일. 로드(Winston Lord)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이 현재 경제제재를 준비중이며 북한이 경제제재 이전에 탈퇴선언을 번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中央日報」, 1993년 4월 1일.

52) 바우처(Richard Boucher) 미 국무부 대변인 발언, USIA Wireless Fil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March 12, 1993, p. 5.

53) USIA Wireless Fil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March 16, 1993.

54) 「世界日報」, 1993년 4월 15일.

55) 미 국무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 회담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

京 접촉을 가졌으며 유엔 안보리의 1차 결의안 채택후 양국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 다. IAEA

IAEA는 대북한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및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으로 인해 야기된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단절을 원하지는 않고 있으며 협의에 의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IAEA는 자체적인 대북한 제재(기술원조 중단, IAEA 회원자격 박탈 등)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특별사찰과는 별개로 임시사찰을 계속 실시하려는 입장이며 두 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의 실시형식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후인 지난 3월 19일 키드 IAEA 대변인은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 때문에 이미 신고된 시설에 대한 사찰까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며 3월 22일 제 7차 임시사찰팀을 평양에 파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56)</sup> 블릭스 사무총장도 지난 4월 14일 북한이 IAEA 핵사찰을 수락할 경우 제 7차 임시사찰을 실시할 것이며 북한의 핵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sup>57)</sup> 특히 특별사찰과 관련하여 IAEA는 2곳의 미신고

---

했다. 「中央日報」, 1993년 4월 15일. 미국은 4월 22일 미·북한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Douglas Jehl, "Bowling to China's Wishes, U.S. to hold talks with N.K.," *The New York Times*, April 23, 1993. 한편 방한중인 타노프(Peter Tarnoff)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열릴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유엔이나 IAEA를 통한 문제해결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미국측이 핵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제한적 회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東亞日報」, 1993년 4월 24일.

56) 「中央日報」, 1993년 3월 20일.

57) 「世界日報」, 「中央日報」, 1993년 4월 15일.

시설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3월 30일 이전에 IAEA는 특별사찰 대상인 미신고시설 2곳의 일부분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다.<sup>58)</sup> 또한 블릭스 사무총장이 NPT 탈퇴선언 직후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에 대응하여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 수용을 제의하기도 하였다.<sup>59)</sup>

## 라. 한국

북한 핵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의혹은 철저히 해소되어야 하지만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극단적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설득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NPT 탈퇴결정이 발효되는 오는 6월 12일 이전까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불변으로 유엔에서 경제제재가 결의될 경우 이에 동참하되 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3월 12일 즉각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NPT 탈퇴선언 철회, IAEA 핵사찰 수용 및 남북한 상호사찰 실현을 촉구하였다.<sup>60)</sup> 김영삼 대통령도

---

58) *The Korea Herald*, April 16, 1993. 이와 관련하여 이시영 오스트리아주재 한국 대사는 지난 4월 16일 블릭스 사무총장이 2곳의 미신고시설이 군사시설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감안하여 사찰기간 동안 이 지역을 비군사화하거나 일부 시설을 가리는 조건으로 사찰을 실시하는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오스트리아주재 북한대사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中央日報」, 1993년 4월 16일.

59) 이 점은 한승주 외무장관의 기자회견시 확인되었다. 「中央日報」, 1993년 4월 3일.

60) 정부 대변인 성명, 「한겨레신문」, 1993년 3월 13일

북한의 NPT 탈퇴 철회 및 핵사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간 경제협력문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나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sup>61)</sup> 한국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판단하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북한간 고위급회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을 모색해 온 한국은 한승주 외무장관의 미국방문(3.23~30)을 마감하면서 NPT 복귀와 특별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북한 유화책을 공개하였다: ①핵사찰을 남북한 군사기지로 확대, ②팀스피리트 훈련의 명칭, 장소, 규모 변경을 통한 축소·조정, ③북한에 대한 핵위협 제거, ④경제협력 확대, ⑤북한과 한·미·일간 관계개선.<sup>62)</sup> 한편 한승주 외무장관은 4월 21일 미·북한간 대화채널을 확대·격상시키고 남북간 상호핵사찰 재개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미기간중 밝혔던 한국의 다섯 가지 대북유화책중 일단 두 가지 카드(핵사찰 확대 및 관계개선)를 제시하는 데 한·미·중 3국간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밝혔다.<sup>63)</sup>

61) 「東亞日報」, 1993년 3월 15일. 한편 한국은 1993년 4월 20일 제10차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3가지 기본입장을 발표하였다: ①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되어야 하고, ②핵무기 개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NPT 복귀, IAEA 특별사찰과 함께 남북상호사찰이 실현되어야 하며, ③북한의 핵문제는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문제와 관련해서는 ①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과 기업인의 방북 추진을 유보하되, ②이제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북 물자교역과 제3국에서의 상담을 위한 접촉은 계속 허용하기로 하였다. 「제10차 통일관계장관회의 발표문」, 1993년 4월 20일.

62) Don Oberdorfer, 'South Korea Urges 'Stick and Carrot' On Nuclear Issue,' *The Washington Post*, March 30, 1993.

63) 「한국일보」, 1993년 4월 22일.

## 마. 중국

중국은 남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기본적인 원칙하에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에 반대하며 관련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 직후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의 보편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64)</sup> 1993년 3월 18일의 IAEA 특별이사회에서도 중국은 대결국면의 조성보다는 건설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sup>65)</sup> 북한 핵문제는 IAEA와 핵안전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66)</sup>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고위관리들에 의해 재차 확인된 바 있다.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핵사찰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남북한과 IAEA가 인내를 갖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sup>67)</sup> 이봉 중국 총리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정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

64) 「朝鮮日報」, 1993년 3월 14일.

65) 「朝鮮日報」, 1993년 3월 19일.

66) 陳士球 비엔나주재 국제기구담당 중국대사 발언, 「東亞日報」, 1993년 3월 19일.

67) 「한겨레신문」, 1993년 3월 24일. 전기침 외교부장은 지난 4월 21일 한승주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톱스피리트 훈련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의 NPT 탈퇴효력이 발생하는 6월 12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남북한간 및 북한·미국간 직접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東亞日報」, 1993년 4월 22일.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68)</sup>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IAEA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분명히 확인되었다.<sup>69)</sup> 그러나 중국이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중국은 지난 4월 8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하였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표출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여론과 대북한 압력사용 반대라는 기본 입장을 각각 북한과 미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하면서 양국사이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바.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는 특별사찰 거부와 NPT 탈퇴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독자적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북한 핵문제가 범세계적 핵비확산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0)</sup>

일본은 북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조·일 관계정상화 교섭을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밝히고 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지난 3월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특별사찰 수락여부가 조·일 수교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sup>71)</sup> 엔도 데쓰야(遠藤哲也) 조·일

68) 「한겨레신문」, 1993년 4월 1일. 한편 이봉 총리는 닉슨 前 미국 대통령을 면접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압력 증대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으며, 북한·미국간 관계개선이 핵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中央日報」, 1993년 4월 11일.

69) 35개 이사국중 중국과 리비아가 반대하였으며 28개국이 찬성, 4개국이 기권, 1개국이 불참하였다.

70) 1993년 4월 4일 미국·러시아 뱅쿠버 정상회담 선언, 「한겨레신문」, 1993년 4월 6일.

71) 「한국일보」, 1993년 3월 2일.

수교회담 일본측 신임대표도 수교회담을 가능한 빨리 재개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핵문제 미해결 상황하에서도 교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sup>72)</sup> 일본은 또한 북한의 NPT 탈퇴여부에 관계없이 국교정상화 교섭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73)</sup> 실제로 일본은 북한에 대해 관계개선과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두 차례(4월 7일, 4월 13일) 제의하였으나 북한에 의해 거절되었다.<sup>74)</sup> 수교회담 재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태도는 북한 핵문제가 한·미·중 3국을 중심으로 풀려나가는 데 대하여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2. 전개방향 전망

북한 핵문제의 관련당사국들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적 특징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문제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당사국들은 북한과 미국이며 여기에 사찰과 관련하여 IAEA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은 각각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북한 핵문제가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대북한 유화책을 먼저 제시하고 미국의 참여를 촉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유화책이 미국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문제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72) 「한국일보」, 1993년 3월 4일.

73) 와타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 외상 발언, 「朝鮮日報」, 1993년 3월 23일.

74) *The Korea Herald*, April 17, 1993.

셋째, 러시아와 일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 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미국간 협상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NPT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6월 12일 이전에 양측이 협상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북한 핵문제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 가. 북한·미국 협상 실패 경우

미국이 북한의 요구조건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북한도 NPT 탈퇴를 고수하고 특별사찰을 거부한다면 북한과 미국사이의 협상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한 경제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나 중국의 동참여부는 불확실하다.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존입장을 감안할 때 경제제재 결의안 표결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충분한 설득노력을 폈는데도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중국의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질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1993년 6월 3일 미국이 대중국 최혜국 지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75)</sup> 북한·미국간 협상이 실패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 핵문제의 전개방향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안에 반대 혹은 기권하는 경우와 찬성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75) 한편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연장여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Douglas Jehl, "Bowling to China's Wishes, U.S. to hold talks with N.K.," *The New York Times*, April 23, 1993.

중국이 반대 혹은 기권하는 경우 서방선진 7개국(G-7)을 중심으로 한 대북한 경제제재가 가해질 것이며 한국은 물자교역과 같은 기존의 남북한 경제협력마저 단절해야 할 것이다.<sup>76)</sup> 중국은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의 주요 원유수입국인 이란 등 기존의 우방국들도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sup>77)</sup> 따라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채 체제의 명맥만은 유지하게 될 것이며 난국타개를 위해 남북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중국은 대북한 지원을 단절함으로써 북한에 최악의 상황이 초래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은밀한 지원은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이 미약하여 경제제재가 의외로 효과를 보일 경우 북한체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미국간 협상이 결실없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협상 실패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양국간 협상이 6월 12일 이전에 타결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IAEA 안전협정 제22항을 근거로 특별사찰 문제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여 협상의 장기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sup>78)</sup>

---

76)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이 NPT 탈퇴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世界日報」, 1993년 4월 15일. 한편 경제제재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북한의 계층이 일반주민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만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재에 대한 당위성문제가 한국내부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7)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해상봉쇄와 같은 강력한 조치도 포함될지는 알 수 없다.

78) IAEA 안전협정 제22항에 따르면 핵물질의 전용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중재에 의

북한·미국간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북한의 NPT 탈퇴선언은 유효하며 이 경우 대북한 경제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상당 기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 나. 북한·미국 협상 성공 경우

북한 핵문제에 관련된 당사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미국간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문제를 야기시킨 북한이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고 IAEA, 한국, 중국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해결의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미국의 양보선과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 협상은 성공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간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NPT 탈퇴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6월 12일 이전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우선 NPT 탈퇴결정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양자간 협상이 타결되는 구체적 시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협상이 어떠한 형태로 타결될 것인가 하는 협상결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현재 관련당사국들이 서로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과 유화책으로 제시된 사항들의 절충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협상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미국간 협상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타결될 수 있는 사항들, 즉 협상의 주요 변수들로는 다음과 같은 8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

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Peter Hayes, *Defusing North Korea's Nuclear Time-Bomb* (Berkeley, CA: Nautilus Pacific Research, March 20, 1993), p. 2.

북한의 결정사항으로서 ① NPT 탈퇴 철회, ② 특별사찰 수용, ③ 임시 사찰 수용(5MW 연료봉); 한국과의 협의사항인 ④ 상호사찰 실시; 그리고 미국의 결단이 필요한 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 수용, ⑥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 ⑦ 핵선제불사용 선언, ⑧ 북한·미국 대화채널 격상 및 정례화.

반면에 상기 협상의 주요 변수들이 타결될 경우 북한·미국간 협상에서 문제시되지 않을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이 특별사찰 거부와 NPT 탈퇴 이유로 제시한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문제이다. IAEA 관련 문제는 북한과 미국사이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의 다른 요구조건들과 비교할 때 부차적 사안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특별사찰을 수용할 경우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 각국 주재 대사들을 통해 밝힌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해소」<sup>79)</sup>와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sup>80)</sup> 문제인데 이는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4가지 사항중 핵위협 해소가 사실상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며 허종 유엔주재 차석대사도 핵위협 해소를 위해 ①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 ② 남한내 미국핵기지 공개, ③ 핵공격을 않겠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81)</sup> 세 가지 실천조치중 팀스피리트 훈련

---

79) 1993년 3월 15일 이철 제네바주재 대사 기자회견, 「世界日報」, 1993년 3월 16일; 허종 유엔주재 차석대사 기자회견, 「每日新聞」, 1993년 3월 17일.

80) 허종 유엔주재 차석대사 기자회견, 「한겨레신문」, 1993년 3월 19일; 「每日新聞」, 1993년 4월 21일.

81) 「한겨레신문」, 1993년 3월 19일.

의 영구 중지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은 타협될 수 있고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대북한 핵위협은 해소될 수 있다.

셋째, 북한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시 한국에 대해 제기한 4가지 요구사항중 하나인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 탈피문제이다. 북한의 핵우산 탈피 요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미국간 협상에서 북한은 미국측에 한반도에서 핵우산을 철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선제불사용을 통한 안전보장을 해 줄 수 있다면 협상에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 허종 유엔주재 차석대사가 4월 19일 마이니치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북한의 사회주의 존중문제이다. 북한으로서는 북한·미국간 관계개선이 체제유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미국 협상이 성공하고 이어서 남북한, 북한·미국 및 북한·일본의 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체제의 존중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승주 외무장관이 대북 유화책으로 제시한 북한과 한·미·일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확대는 북한·미국의 관계개선이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북한·미국간 협상의 주요 변수들이 어떠한 형태로 합의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협상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8가지 협상변수들 중에서 사찰과 관련한 4가지 변수(특별사찰, 임시사찰, 상호사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들을 「사찰」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협상결과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5개의 협상변수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는 이들 5개 주요 협상변수가 “하나의 묶음”(a package)으로 합의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해결의 과정은 우선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존의 참사관급보다 격상된 북한·미국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일련의 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한은 NPT 탈퇴 번복의사를 밝히고 핵의혹 해소를 위한 사찰수용을 약속하며,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의 원칙적 중단과 대북한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천명하게 될 것이다. 양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에 관계개선 회담 기능을 부여하거나 관계개선을 위한 별도의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 핵사찰과 관련, 미국의 특별사찰수용 요구와 북한의 주한미군기지 사찰요구가 동시에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 IAEA의 특별사찰 및 임시사찰, 그리고 남북한 상호사찰 등 세 가지 사찰방법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관련당사국들의 체면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실제 실행단계에서 5개 협상변수의 실시 시점의 선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sup>82)</sup> 다음은 “하나의 묶음”으로 합의될 5가지 협상변수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다.

#### (1) NPT 탈퇴 철회

북한·미국간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NPT 탈퇴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NPT 탈퇴결정은 6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만약 협상이 순조롭지 못하여 이 시점을 넘기게 될 경우 북한은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IAEA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NPT 재가입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

82) 일련의 북한·미국간 회담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참여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단계에서는 양국간 회담을 한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팀스피리트 훈련의 단계적 축소(영구 중지)

월남의 공산화 이후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국의 안보강화에 큰 기여를 했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남북한의 군사력도 과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열세였던 상황에서 탈피하여 시간이 갈수록 대북한 우위를 점유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현실에서<sup>83)</sup> 팀스피리트 훈련의 전략적 가치는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미 군부 인사들도 비공개 석상에서 한반도의 전쟁억제 수단으로서 팀스피리트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음<sup>84)</sup>을 감안할 때 미국이 영구중단을 최종목표로 하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 (3) 핵선제불사용 선언

핵보유국들이 핵비보유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책에는 두 종류가 있다.<sup>85)</sup> 첫째는 핵무기로 공격받거나 위협받는 핵비보유국을 돕기 위해 유엔헌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다. 그러나 많은 핵비보유국들은 「적극적 안전보장」이 유엔헌장에 이미 명시된

---

83) 예를 들어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메네트리(Louis Menetrey) 장군은 1989년 “[현재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1990년대 중반에 한반도에는 미국없이도 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Andrew Mack,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Summer 1991), p. 98에서 인용.

84) Michael Mazarr, *News Briefing with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Washington, D.C.: Federal Information Systems Corporation, April 6, 1993), p. 12.

85) Seong W. Cheo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Situation in East Asia,” *12th PPNN Core Group Meeting: East Asi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Keidanren Guest House, Shizuoka, Japan, November 28~29, 1992, pp. 16~17.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핵보유국들의 「적극적 안전보장」 정책을 비판하였다. 1975년 이후 핵비보유국들은 핵보유국들이 자신들에 대해 직접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소극적 안전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선언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핵비보유국들의 요구에 대해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였다.<sup>86)</sup>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핵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은 여러 가지 단서가 붙은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을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1978년에 발표한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의 내용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거나 지원을 받는 핵비보유국에 의해 공격받지 않는 한 해당 핵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sup>87)</sup>

북한이 미국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핵위협 해소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중국 및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우발적 충돌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여도 미국의 핵위협에 놓이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sup>88)</sup>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아직

86) William Epstein,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A United Nations Perspective* (Cambridge, Mass.: Gunn & Hain, Publishers, 1984), p. 31.

87) ACDA, "Statement by Secretary of State Vance: US Assurance on Non-Use of Nuclear Weapons, 12 June 1978," in *Documents on Disarmament 197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88) 북한이 미국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직면해 왔다는 사실도 미국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아내려는 북한의 의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는 Leonard Spector and Jacqueline Smith, "North Korea: the Next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vol. 21, no. 2 (March 1991), p. 9 참조. 지난 2월 미 전략사령부의 버틀러(Lee Butler) 장군은 전략

해소되지 않았고 또한 러시아의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도 조건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sup>89)</sup> 미국이 중국과 같이 무조건적 핵불사용 보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으로서 상대방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만 핵무기로 대응하는 핵선제불사용(no-first-use) 정책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한 핵선제불사용을 북한의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sup>90)</sup> 북한 으로서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이 함께 실시되는 상황에서 핵선제불사용까지 얻어냄으로써 그들에 대한 핵 위협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는 셈이다.

#### (4) 북한·미국 대화채널 격상 및 정례화

북한·미국간 협상이 성공할 경우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접촉

---

핵무기의 목표에 구소련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잠재 적 대국가들(여기에는 북한도 해당됨)도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Eric Schmitt, "Head of U.S. Nuclear Forces Plans for World of New Foes,"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5, 1993.

- 89)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하려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만 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 Platias and R. Rydell, "International Security Regimes: the Case of a Balkan Nuclear-free Zone," in D. Carlton and C. Schaerf (eds.), *The Arms Race in the 1980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 292.
- 90) 핵선제불사용 선언은 미국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의 수정을 의미한다. 미국내부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핵비확 산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려 한다면 핵비보유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핵실험 전면 금지」와 함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한반도에서부터 이러한 정책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미 설득외교가 필요할 것이다.

은 바로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의 회담채널이 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 로드(Winston Lord) 신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1993년 3월 31일 미국의 정책목표를 밝히면서 북한이 핵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경우 관계개선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sup>91)</sup>

#### (5) 핵사찰 실시

핵사찰에는 IAEA가 실시하게 되는 특별사찰과 임시사찰, 남북한간의 상호사찰, 그리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이라는 4가지 협상변수가 얽혀 있다. 현재 사찰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이다. 대북한 유화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과 상호사찰도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찰대상을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로, 사찰회수를 첫 1회로 한정함으로써 핵사찰 실시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단기적 관점으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사찰대상은 원칙적으로 남북한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망라하게 될 것이다. 우선 4가지 협상변수의 의미와 이에 대한 관련당사국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합의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특별사찰

북한에 대해 적용되기 전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특별사찰규정은 이라크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가 1992

---

91) Winston Lord, "A New Pacific Community: Ten Goals for American Policy," *Opening Statement at Confirmation Hearings*,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March 31, 1993.

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명예를 걸고 실시하기로 결의한 사찰제도이다.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여부는 핵무기확산방지에 대한 국제적 결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IAEA로서는 특별사찰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NPT 탈퇴 철회와 함께 특별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제안대로 일부 시설을 가리거나 사찰기간중 비무장화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특별사찰이 실시될 경우 북한의 은폐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핵능력이 투명하게 노출됨으로써 북한의 핵카드가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sup>92)</sup> 그러나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존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NPT 탈퇴라는 마지막 핵카드를 썼던 북한은 기꺼이 은폐사실을 시인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이 그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사실을 들어서 허위보고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선전하려 들 것이다.

#### (나) 임시사찰(5MW 연료봉)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임시사찰도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여느 임시사찰과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자로를 가동하고 남는 핵폐기물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폐기물의 총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AEA는 북한이 1986년부터 가동한 영변소

---

92) 북한은 추출한 플루토늄을 IAEA 감시하에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 핵능력에 대한 불확실성만큼 효과적인 핵카드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재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에 대한 실태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북한은 동 원자로의 연료봉을 교체한 적이 없으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동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핵폐기물도 생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핵연료봉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북한과 IAEA가 금년 봄 5MW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연료봉 샘플을 채취·분석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이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sup>93)</sup> 샘플 분석결과 북한의 주장과 달리 연료봉이 교체된 사실이 발견되면 이는 북한이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교체하면서 핵폐기물을 양산하여 은닉하였거나 이미 핵폐기물을 이용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sup>94)</sup>

---

93) 알브라이트(David Albright)는 연료봉에서 추출한 샘플을 분석하여 북한의 위반 여부를 정확히 탐지하는 데에는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David Albright, "North Korea drops out,"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y 1993.

94) 재처리후 폐기물 저장소로 의심되고 있는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나 5MW 원자로 연료봉의 샘플을 채취·분석하는 것이나 IAEA가 판단하고 있는 「중요한 불일치」를 해명하는 데에는 같은 기능을 한다.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 제출한 원자로 운전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원자로의 실제 가동기간과 핵폐기물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IAEA가 북한과 합의한 연료봉 분석에 앞서 성급하게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고집하여 유엔 안보리 상정까지 초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된 면이 없지 않으며 핵문제를 “서둘러”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 헤이즈(Peter Hayes)는 IAEA의 이러한 성급한 결정이 전술적 실수라고 간주하고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가능성을 들고 있다: ① IAEA가 이라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음, ②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③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추진하게 만든 역사적 기원과 지역적 상황에 대한 서방관리들의 인식 부족. 1993년 4월 20일 필자와의 의견교환.

#### (다) 상호사찰

남북한 상호사찰은 양측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미국간 협상에서는 북한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곳의 미신고시설과 이에 상응하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로 제한될 것이다.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1992년 3월 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월 25일까지 20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찰대상 및 방식에 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의심동시해소원칙」하에 한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사찰하고 북한은 남한내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적으로 동시에 사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군사시설을 포함한 성역없는 사찰과 상대방의 특정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24시간내에 사찰하는 특별사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을 포함하여 5가지 협상변수가 연계된 포괄적 북한 핵문제 해결구도 내에서 상호사찰이 협상타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모두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북한의 경우 그러한 조짐을 보여 왔다.

#### (라) 주한미군기지 사찰

남북한 상호사찰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모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면동시사찰 주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1992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헤이즈(Peter Hayes)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헤이즈는 동 방문중 11월 13일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을 면담한 후 북한이 남한의 사찰대상 군사기지수를 1~2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sup>95)</sup>

95) Peter Hayes, *Nuclear Inspections in Korea: Rough Waters Ahead?*, p. 4.

당시 한·미 양국의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으로 남북한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제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미국간 협상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상호사찰시 북한이 군사기지라고 주장하는 특별사찰 대상이 2곳인 점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기지도 2곳 정도가 일차적으로 상호사찰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sup>96)</sup>

반면에 한국은 성역없는 사찰과 특별사찰 주장을 일단 포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sup>97)</sup> 강력한 사찰만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보다 온건한 사찰제도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구분하는 문제는 북한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곳의 미신고시설에서 핵물질이 발견될 경우 북한의 양시설 분리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됨으로써 한국이 주장해 온 대로 두 시설에 대한 구분없는 사찰이 실시될 것이다. 그러나 사찰대상을 쌍방이 합의하고 사전통보기간도 충분히 둬으로써 한국의 특별사찰 개념은 상당히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를 상호사찰에 개방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해 왔으므로<sup>98)</sup> 상호사찰의 형식이나 방법에 대한 미국의 이해

96) 북한은 군사시설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도 있다. 1991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헤이즈 박사에 따르면 김용순 당시 로동당 국제부장은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한국의 사찰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Peter Hayes, *North Korea and Bilateral Nuclear Inspections: An Interview with Kim Yong Sun* (Berkeley, CA: Nautilus Pacific Research, November 1991), p. 4.

97)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은 “북한은 남한의 동의없이 짧은 시간내에 남한의 군사기지를 사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Ibid., p. 2 참조.

98) 예를 들어 솔로몬(Richard Solomon)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발언 참조, 「한국일보」, 1992년 6월 9일.

는 한국의 이해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마) 협상가능한 사찰방안

세 가지 사찰방법(IAEA 특별사찰과 임시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 중 임시사찰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과는 무관한 제도로서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을 추출할 수 있는 임시사찰도 “중요한 불일치”를 해명하는 데에는 특별사찰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임시사찰의 실시시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해 온 미신고시설에서 핵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희석시키고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특별사찰, 5MW 원자로에 대한 임시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이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IAEA의 특별사찰 의지가 관철됨과 아울러 북한은 기존의 관례대로 군사시설에 대한 IAEA “관리”들의 “방문”만 허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주한미군기지를 사찰했다는 명분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IAEA 특별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이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실시될 경우 대체로 여섯 가지 정도의 실시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특별사찰의 경우 IAEA가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를 함께 사찰하는 방안(A)과 2곳의 미신고시설만 사찰하는 방안(B)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상호사찰에서는 남한이 2곳의 미신고시설을, 북한은 주한미군기지를 상호사찰하는 방안(C), 북한이 주한미군기지만 사찰하는 방안(D), 상호사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방안(E)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실시가능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도표 1〉 협상가능한 사찰방안

방안	북한	한국	IAEA
1. (A, C)	○	○	△
2. (A, D)	○	×	△
3. (A, E)	×	×	△
4. (B, C)	○	○	○
5. (B, D)	○	×	○
6. (B, E)	×	×	○

방안 1: (A, C)

IAEA가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를 사찰하며 같은 사찰대상에 대해 남북한 상호사찰도 실시된다. 북한과 한국은 방안 1을 환영할(○) 것이나 IAEA는 주한미군기지가 핵활동과 관련없는 순수군사기지라는 점에서 유보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sup>99)</sup> 상호사찰에 IAEA 사찰요원을 참가시키는 것도 방안 1의 변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방안 2: (A, D)

IAEA가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를 함께 사찰하는 대신

---

99) IAEA의 주한미군기지 사찰은 미국 카아네기 재단의 스펙터(Leonard Spector)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朝鮮日報」, 1993년 3월 18일. 그러나 IAEA가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를 고려한다면 유보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① 명백한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은 IAEA의 오랜 관례에 어긋난다; ②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이 다른 지역의 IAEA 사찰활동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들이 사찰을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의 주한미군기지 사찰만 허용한다. 북한은 방안 2를 환영할(○) 것이나 한국은 상호사찰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반대할(×) 것이며 IAEA는 방안 1에서와 같이 유보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방안 3: (A, E)

IAEA에 의한 사찰만 실시된다. 주한미군기지를 직접 사찰하기를 원하는 북한은 방안 3을 반대할(×) 것이며 상호사찰을 원하는 한국 역시 반대할(×) 것이다. IAEA는 방안 1에서와 같이 유보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방안 4: (B, C)

남북한 상호사찰을 통해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를 동시에 사찰하되 IAEA는 2곳의 미신고시설만 사찰한다. 북한과 한국은 방안 4를 환영할(○) 것이며 IAEA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환영할(○) 것이다.

방안 5: (B, D)

IAEA는 2곳의 미신고시설을 사찰하고 북한이 주한미군기지만 사찰한다. 북한은 방안 5를 환영할(○) 것이나 한국은 상호사찰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반대할(×) 것이며 IAEA는 환영할(○) 것이다.

방안 6: (B, E)

IAEA가 영변의 핵시설만 사찰한다. 방안 3에서와 같이 북한과 한국은 방안 6을 반대할(×) 것이지만 IAEA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상의 여섯 가지 방안중 관련당사국들의 입장이 절충되어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은 네번째 (B, C)로서 남북한과 IAEA 모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방안 1 (A, C)로서 IAEA가 주한미군기지 사찰에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특별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이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2곳 정도)에 대해 실시되는 경우 IAEA는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 채취를 위한 임시사찰을 함께 실시하고, 남북한은 상호사찰을 통해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를 사찰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 IV. 맺는 말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와 NPT 탈퇴선언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제적 이목이 가장 크게 집중된 현안임에 틀림없다. 본고에서는 남북한 및 주변강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현재도 관련당사국간 문제해결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먼저 북한이 IAEA 안전협정에 서명한 1992년 1월부터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어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의 진행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공교롭게도 한·미 양국의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과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결의가 맞물려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북한의 NPT 탈퇴선언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각종 정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의 핵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직접 현장사찰을 실시하고 있는

IAEA만이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대처방안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장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미국간 협상의 성패 여부에 달려 있다. 양국이 타협할 의사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만 만족된다면 협상의 성공도 낙관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에서 이탈하는 돌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해야 하며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특별사찰의 수용형식은 IAEA와 남북한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체면이 유지되는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국은 영구중지를 전제로 팀스피리트 훈련의 축소시간표를 북한에 제시하고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할 경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북한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선언하고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적 신뢰부터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군비통제를 추진해 온 유럽과 달리 남북한간에는 아직 상호불신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대표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보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냉전의 상처도 가시지 않은 한반도의 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 핵문제는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관련당사국들이 서로에 대한 냉전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1962년 미·소 양국을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고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오히려 동·서 데

탕트의 촉매역할을 했듯이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북한 핵문제가 관련당사국간 타협을 통해 해결된다면 남북한관계는 급진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한관계의 획을 긋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北韓 核問題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李 三 星

(翰林大 教授)

## I. 머리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핵확산금지체제」로의 복귀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① 주한미군기지 완전 공개, ② 비핵국가인 북한에 대한 핵위협, 즉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정책 폐기, ③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과 같은 북한에 대한 불공평한 사찰요구 중지, ④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단 등이 그것이다. 리철 제네바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3월 15일의 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NPT 복귀 조건은 ①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 중지, ②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제거, ③ IAEA가 유일한 초강대국에 복종하는 것을 중지할 것, ④ IAEA 사무국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 등이었다.<sup>1)</sup>

리철 대사가 말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제거는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제거라는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가 지적한 IAEA 운영의 불공정문제는 곧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중지요구를 확대 해석하면, 그들이 영변 핵시설 공개에 상응하는 미국

---

1) 「한겨레신문」, 1993년 3월 17일.

의 조치로 요구해 온 남한내(과거) 미군 핵기지 공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측은 북한과 대화에 응할 의사는 밝히고 있으나, 그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주장들을 협상대상으로 삼아 북한과 실질적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 직후 있던 미국의 제안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3월 17일 北京에서 제30차 참사관급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접촉에서 북한은 북한측이 제시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탈퇴번복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으며, 「팀스파리트」 훈련 이후 협의를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sup>2)</sup> 3월 19일 미국과 북한은 북한측 제안으로 제 31차 참사관급 접촉을 가졌으나, 이는 미국이 북한에게 우선 NPT 복귀를 촉구하고 북한은 이를 거부하는 의례적인 접촉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sup> 5월 초 미국과 북한 양국은 고위급 접촉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4월 하순까지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갖는다고 해도 그 주요 목적은 북한 당국에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4)</sup>

미국은 이처럼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하되, 북한의 요구조건에 대한 협상의사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나 군사적 제재가 가능할지, 또 그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도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에서 모종의 대화와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

2) 日本 「共同通信」, 1993년 3월 18일.

3) 「한국일보」, 1993년 3월 21일.

4) 미 국무부 Kartman 한국과장의 지적. 1993년 4월 21일.

이 글은 먼저 북한의 NPT 탈퇴로 부각된 한반도 핵문제를 한반도 통일과정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 국제기구와 북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한 상호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요청되는 한국 정부의 자주적인 핵문제 인식과 창의적인 외교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은 아울러 한반도 핵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을 포함한 남북한 민족당사자들 모두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 II.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본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

### 1. 미국의 「핵억지정책」 고수와 북한의 「비핵지대화론」의 갈등

미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정책」과 「핵을 통한 억지」라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의 핵심인 동시에, 남북간 및 북한·미국간에 지속되고 있는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진해 온 「비핵화정책」은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한다. 하나는 미국이 195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에 배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을 한국으로부터 철수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과 북한이 다같이 핵무기는 물론 핵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87년 이후 구소련 및 러시아연방과 일련의 실질적인 핵감축협정을 맺어 왔다. 특히 1991년 9월 미국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군사력 통제에 문제를 안고 있던 소련의 전술핵 폐기를 유도하는 한편, 미

국 핵무기체계의 구조개편을 위해 미국이 해외에 배치해 온 지상 및 해상 전술핵을 전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부시 미 대통령의 전술핵관련 감축선언이 있는 후인 1991년 11월 8일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으며, 1991년 12월에는 한국내 「핵부재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 및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이러한 형태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북한의 「비핵지대화」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남북한 모두의 핵재처리시설 보유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기 이전의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되는 한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핵물질 생산의 자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은 1970년대 말 한국 정부가 핵개발을 기도한 데 대하여 강하게 제재한 바 있으며, 핵재처리시설의 건설 역시 반대해 왔다. 따라서 1991년 11월의 한국 정부의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은 핵무기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역시 영변의 핵재처리시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의 입장은 핵무기 개발 자체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려는 「총체적 금지」(Total Ban) 정책으로 요약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핵재처리시설의 가동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를 의심하면서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의 가동을 통한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과 은닉을 계속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미

국은 핵재처리시설이 건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영변에 대한 핵사찰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가 첨예한 국제적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유사시 남북한의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미국 핵무기의 「반입」 및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 유지와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1991년 11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에는 한국에 의한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배비, 저장, 사용을 금하고 있을 뿐, 외국 핵무기의 한국내 반입이나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북한이 제시해 온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은 “특정 지역내의 관계국가들이 핵무기의 생산, 실험, 보유, 반입 등을 공동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반도내 외국 핵무기 반입 및 사용」이라는 문제를 두고 한국 및 미국 정부와 북한과의 사이에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온 이유는 미국이 한국 영토로부터는 전술핵을 철수했지만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핵을 통한 억지」라는 종래의 핵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1992년 6월 미·러 정상회담에서 전략핵탄두를 1992년 현재의 1/3 수준으로 추가 감축하기로 하는 등 일련의 핵감축협상에 임해 왔지만, 적어도 수천개의 핵탄두 보유를 바탕으로 다른 핵보유국들로부터의 핵위협에 대처하고, 군사초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지킨다는 목적을 위해 「핵억지」 전략 자체는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핵억지전략을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핵우산」 정책을 견지하고 있

다.<sup>5)</sup>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미국 등 외국 핵무기의 한반도로의 「반입」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지대화론」과 근본적인 갈등을 내포해 왔던 것이다.

## 2. 북한의 NPT 탈퇴 배경 및 북한 핵개발의 성격과 내용

북한은 1980년 처음으로 원자료를 가동시킨 바 있으며, 1985년에 NP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NPT의 부속 의무사항인 「핵안전협정」 서명을 거부했었다. 1990년 2월 비엔나의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가입하여 국제적 핵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위협 금지, 그리고 한반도의 핵무기 철수 및 대북한 핵위협 제거를 미국이 법적으로 보장할 것 등 두 가지를 요구했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왕에 가입한 NPT도 탈퇴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IAEA 이사회는 그와 같은 조건들은 이 기구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미·북한관계의 문제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요구조건을 거부해 왔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제재를 실시한 후 그 다음 국제적인 제재대상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의 핵시설 건설이 군사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관점을 부각시켜 왔다. 미국은

---

5) 미국은 공중전술핵 사용가능성을 전제한 대한민국 「핵우산」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자신의 핵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파악하고, 「핵우산」 정책 등 기존 미국 핵정책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누차 밝혀 왔다. 한 예로 로버트 리스카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1992년 7월 24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朝鮮日報」, 1992년 7월 26일.

영변 핵시설이 핵재처리시설을 포함한 군사적 용도라고 주장하면서 우선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어떤 실질적인 관계개선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991년 말 미국이 실시한 한반도 전술핵 철수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진일보였으나 미국은 괄도의 공군전술핵을 통한 대한민국 「핵우산」 제공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정책과 북한의 「비핵지대화」 입장간 갈등으로 인한 긴장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그러던 중 북한이 1991년 말 이후 「핵안전협정」에 가입하여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전망을 보이자 미국은 IAEA의 사찰 수용은 “유용한 과도기적 조치일 뿐 미국의 최종적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sup>6)</sup> IAEA에 의한 핵사찰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남북상호사찰」 체제를 수용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IAEA 이사회는 미국 등 강대국 중심의 핵정책에 가끔 반기를 드는 상당수 제3세계 국가들도 포함한 3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이 이 기구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강제사찰을 관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미국은 IAEA의 사찰을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미국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히 개입할 수 있는 「남북상호사찰」 체제를 미·북한 관계개선의 필수조건으로 추가하게 된 것이다.

---

6) Larry A. Nic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5, 1991, p. 9. 미국은 IAEA의 핵사찰은 대상국가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에 매우 불충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AEA는 각 나라들이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원자탄 제조에 필요한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IAEA 사찰관들은 이 저장된 플루토늄을 감시하는 데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IAEA 체제로는 해당국가가 재처리된 플루토늄의 일부를 숨겨 핵무기 개발에 이용하는 사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Ibid., p. 9.

그러나 IAEA의 사찰에 이은 남북상호사찰체제를 구축하려 한 미국의 노력은 난관에 봉착해 왔다. 북한은 남북상호사찰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나 미국 및 한국과는 다른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즉 남한·미국측의 「대칭사찰」 원칙에 맞서 북한은 「의심동시해소」 원칙에 따른 「비대칭사찰」 원칙을 주장하였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민간핵시설을 지난 17년간 IAEA의 사찰대상으로 공개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영변 등 민간핵시설을 사찰대상으로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며,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면 북한 역시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대칭사찰」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이 북한의 영변 등 민간핵시설에 대하여 핵개발 의혹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남한내 미군기지에서 핵철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간 핵시설 대 남한내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것처럼 남북상호사찰의 조건으로 남한 핵기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을 거부하고 군사시설내 핵은닉을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일축해 왔다. 미국은 남북상호사찰체제 건설을 통한 대북한 강제사찰이 순조롭지 않자, IAEA의 사찰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핵사찰 압력을 강화하여 왔다.

1992년 봄 이후 북한에 대한 IAEA의 임시사찰은 별다른 문제없이 여러 차례 진행중이었으나 한·미양국은 1992년 10월 양국간 연례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의혹 해소 불충분을 이유로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NPT 탈퇴는 남한 핵기지 개방 등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는 댓가로 요구해 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가운데 IAEA가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특별사

찰」 등 강제조치를 취하는데다, 1992년 10월의 결정에 따라 1993년 3월 재개된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이루어진 측면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IAEA가 특별사찰대상으로 지정한 영변부근 2개 장소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한 것에 대하여 미국측은 대체로 북한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첫째, 북한이 만약 이들 장소를 사찰 받은 후 핵무기 제조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북한이 핵문제를 대서방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을 경우,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NPT를 탈퇴하여 시간을 버는 가운데 핵무기 제조를 완성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핵무기 개발단계에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객관적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공위성을 통하여 핵시설을 포착할 수는 있지만 건물안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성사진만으로 정보를 분석·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 국무부 및 국방부 동북아 정세분석관들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든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이 제시한 결론은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은 충분히 확보하여 은닉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핵폭탄 개발에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정도의 것이다.

핵폭탄을 만드는 데에는 보통 7~8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북한이 추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플루토늄의 수준에 대하여 현재 IAEA가 확인한 것은 북한이 신고한 90g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점 밖에는 분명하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미국측이 주장하듯이 핵무기 개발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나 핵폭탄 생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핵확산금지체제」를 탈퇴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스스로 주장하듯이 북한이 건설한 핵재처리시설이 평화적 목적의 것이며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서명 이후 이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 3. 탈냉전시대 미국의 제 3세계 전략 추이와 한반도 핵문제

한반도의 핵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한 미국이 이처럼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 문제에 임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의한 핵확산의 금지라는 한정된 목표를 넘어선 보다 광범한 정치·군사적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자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외교적 목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은 1980년대 이후, 특히 핵물질과 핵관련 기술이 중소국가들을 포함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강력한 제동을 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의 국익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작업으로 판단되고 있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 개발까지는 하지 않고 평화적 이용에 한정해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외교목표를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건설은 여타 중소국가들의 핵재처리시설 건설 및 확장노력을 가

져오고 또 그것이 각국의 주권의 일부로서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독과점이 붕괴하여 핵연료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와해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주요 핵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핵재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이 반서방적 정권들에 의해 비밀리에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산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이익 역시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핵시설 건설이 계속될 경우 그것이 동북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핵시설 확장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핵재처리시설 건설 또는 확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리더쉽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동북아에서 핵억지와 「핵우산」 제공을 통한 소위 「균형자」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최소한의 핵재처리시설도 철저히 저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도 동북아지역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인 구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탈냉전으로 동북아에서도 새로운 정치·군사질서가 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이 지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안보문제의 우선성과 미국의 리더쉽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합의구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자신이 중시하는 안건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

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의 군사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 1991년 가네마루 신 당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중심이 되어 일·북한간의 수교협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일 무렵이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라 하겠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부시행정부의 전형적인 현실주의적 군사정책에서 탈피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신 행정부가 국방비 삭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대외적인 군사적 개입능력의 유지와 그 효율성을 높이는 데 부심하고 있는 추세를 주목하면서 이것이 한반도 냉전체제의 평화적 해결에 미칠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행정부는 일찌기 25% 선의 국방비 감축과 240만 현 수준에서 160만명 규모로의 병력감축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었다.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는 더 큰 삭감과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당시 논의된 삭감계획인 「옵션 B」에 비하여 클린턴 행정부가 세우고 있는 「옵션 C」는 미군 병력규모를 140만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행정부의 군사력 감축계획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신속배치군」의 중요성이 전혀없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구소련 위협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대규모 병력유지 필요성은 크게 준 것으로 보면서도 지역분쟁에 대한 개입능력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3년 초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인 레스 애스핀(Les Aspin)은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군사력은 주요 지역분쟁들에 개입하여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① 미국이 1991년 1월 중동에서 이라크에 대하여 전개한 「사막의 폭풍」과 같은 수준의 군사작전, ② 한반도에서 「걸프전」 수준의 비상사태 개입능력, ③ 1989년

미국이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전개한 군사작전, ④ 소말리아 타입의 소위 「인도주의적」 군사작전, 이 네 가지 규모의 군사작전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민주당 행정부는 「옵션 C」에 따라 20만 정도의 병력을 더 감축하되, 「해병대」 또는 신속배치군 성격의 병력체제는 더 증강할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현 행정부는 전체적인 병력규모와 국방비는 삭감하되, 지역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효율성 제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유사시 제3세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사는 미국이 과거 냉전시기에 한반도에서 구축해 온 군사정책들의 대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군축을 통한 통일에의 평화적 접근은 군사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지적인 바와 같이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역시 주요 분쟁가능지역에서 군사적 대응태세 확립 및 미국의 기존 정치·군사적 위상 수호를 위한 기존 정책들의 골간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창의적 노력은 미국의 기존 입장에서부터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비상사태 대비 중심의 군사적 접근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창의적 모색은 남북한 민족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 Ⅲ. 한국 정부의 기존 대응방안 평가

북한의 NPT 탈퇴 이후 한승주 외무장관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핵문제를 논의하던 때인 1993년 3월 말, 한 장관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과의 회견에서 다음 5개항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5개항은 미국과 북한간의 핵문제 이견의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전개할 거중조정역할의 적실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체제」로 복귀하여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장관이 밝힌 5개항은 다음과 같다: ① 「팀스피리트」 훈련을 축소 조정한다. ② 북한이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허용할 경우 이에 대한 댓가로 IAEA 사찰단이 남한의 미군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핵사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제거한다. ④ 북한과 미국, 일본간 관계개선에 협조한다. 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이 다섯 가지 사항은 북한이 제기하는 조건들을 대체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예외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한다”는 부분이다. 미국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할 수 있으나, 한국으로부터 「핵우산」은 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하기 전,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미국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guarantee)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이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미국이 1978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인데, 어떤 비핵국가가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 무장공격을 감행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가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관리들은 이러한 원칙이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 줄 용의가 있음을 제안해 왔다고 말한다.<sup>7)</sup>

그런데 미국이 말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안전보장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 개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비핵국가도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 대해서 핵공격이 아닌 재래식 공격을 행하더라도 미국은 그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선제 사용가능원칙」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핵우산」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든 갖지 않든 상관없이 유사시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이 말하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 의 종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제기하는 핵심 주장들 중의 하나인 북한에 대한 핵위협 의 종식이라는 북한의 입장에 근접하여 북한의 핵사찰체제 복귀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남북핵통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남북한 상호사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그들이 현재까지 시사해 온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핵우산」 정책 자체의 논리적·현실적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승주 외무장관의 초기 외교방향은 북한 NPT 탈퇴문제로 초래된 국내외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름대로 고립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미국의 현상유지적 핵정책 사이에서 창의적인 거중조정

---

7) Ibid., p. 10.

역할을 수행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3월 말에 한 장관이 제시한 바 있는 5개항은 위에서 지적한 점에서 보다 분명해진다면,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방향 설정에서 중대한 진일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1993년 3월 말을 전후해 보였던 유연성있는 대응태도는 시간이 가면서 미국과 국내의 견제에 부딪치면서 부분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견제는 다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써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간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 고위정책담당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한 예로 레스 에스핀 미 국방장관은 1993년 4월 21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의 한 청문회에서 한국이 1993년 78%의 방위비 분담비율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 김일성의 핵무기 개발야심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sup>8)</sup> 또한 최근 로버트 리스카시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1993년 4월 21일 북한의 경제난의 한 원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북한이 완전한 좌절과 내부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남침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유지 등 기존의 미 군사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sup>9)</sup>

둘째,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

8) *The Korea Herald*, April 23, 1993.

9) *Ibid.*

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안보리를 통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력 강화의 가능성과 효과를 제약하고 있는 중국요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다양한 압력과 회유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을 통한 협상시에도 북한의 NPT 탈퇴를 미국의 기존 정책과 이익의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달성하려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 형태의 협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최근 유엔이 경제제재를 결정할 경우 중국이 100%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6월 12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sup>10)</sup>

미국이 이처럼 유엔 안보리와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책들—주한미군 유지, 군사훈련, 「핵우산」 정책 등—을 북한 NPT 탈퇴 철회문제와 분리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셋째, 미국이 탈냉전시대 세계 및 동북아전략의 주요 축의 하나로서 일본과의 동반자관계를 모색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압력과 회유와 동시에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다지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 여러 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대량파괴무기 확산문제 담당팀」을 일본에 파견하여 핵·화학·생물무기 및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두 나라의 협의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연

---

10) 「朝鮮日報」, 1993년 5월 5일.

2차례의 정기적인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sup>11)</sup> 이 자리에서 미국측은 일본 정부의 대외개발원조(ODA)를 수혜국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에 대한 협조여부와 연계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역시 최근 일본의 나카야마 도시오 일본 방위청 장관이 5월 3일 미국을 방문하여 미·일 안보체제유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NPT 탈퇴 철회를 위한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sup>12)</sup>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이 같은 미·일 두나라 사이의 공조체제 강화는 일본 방위청 관리들이 북한이 올해 안으로 남한 전역과 일본의 대부분 지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핵무기를 장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노력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이처럼 미국의 주요한 외교노력이 북한의 핵개발을 핵무기 개발로 기정사실화하고, 중국에 대한 압력과 회유를 강화하며,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다지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이 북한과 5월 초에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급 접촉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만큼 미국과 북한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의 공간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간의 고위급 접촉에서 유화책이 전달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한국 외무장관의 분석이 설득력있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sup>14)</sup>

---

11) 「한겨레신문」, 1993년 5월 5일.

12) 「한겨레신문」, 1993년 5월 5일.

13) *The Korea Herald*, May 2, 1993.

14) 「朝鮮日報」, 1993년 5월 5일.

## IV. 한반도 핵문제 접근방안

###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조정

현재의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당면한 목표는 북한이 국제 핵사찰체제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목표는 남북한이 다같이 그와 같은 국제적 사찰체제에 적응하는 가운데 남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남북간 상호사찰체제를 이미 남북간에 합의되어 있는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확립해 나가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견이 있다. 이러한 이견은 다음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

#### 가. 북한의 정책방향: 고립주의인가, 국제주의인가

우선 기본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이 곧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이다. 현재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극단적 형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체제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게 되면, 북한이 국제핵사찰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장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은폐하는 동시에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핵사찰 거부의 명분이 된 「탐스피리트」 훈련과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정책 등은 협상의 대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광범한 대북한 경제, 외교, 군사적 압력의 일환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대응논리로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핵개발을 핵무기 개발로 등치시키며, 더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체제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인식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경직시킨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북한의 국제 핵사찰체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과 양보는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는 가운데 결국은 북한에게 중요한 문제를 양보해 주면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말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끌어 간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배제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인식은 북한의 핵개발이 곧 핵무기 개발은 아니며, 설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의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것을 체제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고집스럽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과 북한에 대한 관련국들로부터의 군사적 압력 강화를 감수할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실제로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리라고 보는 것은 북한을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자로 보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고립주의적인 선택이 아닌 국제주의적 선택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갖고 있다. 북한은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과 평화적 공존의 틀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미국, 일본이 중국과 외교정상화를 이룬 가운데 경제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왔

던 것과 같이 북한도 그러한 경제적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이러한 국제주의적 노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데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에 있어서 국제주의 노선이 내포하는 체제개방은 곧 북한체제의 약화와 붕괴로 이끌 것을 북한 당국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한 국제주의 노선을 진정으로 선택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주의적 개방노선, 말하자면 일종의 북한식의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은 북한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보여온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와 국제환경에의 적응노력에서 나타난다: ① 북한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임을 선택하였다. ② 1991년 말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를 계기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등 남북간 평화공존의 틀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해 왔다. ③ 1992년 미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조건으로 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 핵사찰체제를 일단 받아들인 가운데 여섯 차례에 걸친 임시사찰을 받아 들였다. ④ 남북간의 실질적 경제교류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 왔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정도에 이르렀다. ⑤ 북한의 NPT 탈퇴 이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일시적인 증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상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저간의 북한 태도의 흐름은 북한의 NPT 탈퇴가 국제적인 경제·외교·군사적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결론짓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보다 북한의 NPT 탈퇴는 제한

된 목적들-북한의 군사적 안전보장과 주변국들과의 경제·외교관계 확대-을 달성하려는 행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북한의 핵사찰체제 복귀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제한된 목적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수용할 경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관건은 북한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가가 되며, 이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및 미국간의 협상타결 전망은 북한의 요구대상의 주목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들-「팀스피리트」 훈련, 미국의 대북한 「핵선제사용읍선」 위협 등-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얼마나 유연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통일과정과의 연계 필요성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끝까지 고집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핵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입장차이와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NPT 탈퇴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장들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전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양보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고립주의 노선을 버리고 국제주의 노선을 추구하더라도 북한과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주도의 흡수통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북한과 협상하는 기회로가 아니라, 그간 미국의 기존 군사정책의 틀을 유지시키는 가운데 북한을 기존의 미국·한국 주도의 체제에 더욱 순응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은 북한이 국제주의적 노선을 축으로 한 북한 나름의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지향을 북한체제 유지의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또 가능한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고무시키는 가운데, 남북한이 평화공존의 바탕으로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더 나아가 정치공동체 형성의 바탕을 준비해 감으로써, 남북한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비전은 남북의 어느 일방의 붕괴나 일방에 의한 급작스런 흡수통합을 이루기 위한 성급한 압력·고립화정책을 지양하고, 그 대신 남북한 각자가 보다 나은 형태의 정치·경제체제로 변화하여 나가는 가운데 서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닳은 꼴이 되어 만나도록 고무시키는 형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의 비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 핵사찰문제도 그러한 남북간 경제 및 정치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는 일보 전진을 위한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에 대한 어떤 선에서의 평화적인 타협과 조정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과정없이 북한의 국제주의적 지향을 고무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여부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제안들을 처음부터 불신하기 보다 전진적으로 협상과 실행작업을 진행시키는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촉진해 나가려는 자세에 달려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NPT 탈퇴로 재삼 부각된 「팀스피리트」 군사훈련과 북한에 대

한 핵위협문제 등은 한국 정부와 미국의 결심에 따라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냉전 해소의 선결요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남북한 및 미국간의 협상과 타협은 이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2. 기본방향

우리가 이번 북한 NPT 탈퇴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자세는 북한의 NPT 체제 복귀라는 당면한 과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나아가 동북아 질서의 평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비전을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구체적인 방법과 조건들은 일반적인 상식인의 수준에서 충분히 제시될 수도, 예측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임하는 기본자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태 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인식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 문제를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양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북한의 도전으로 파악하고, 이를 주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서 미국 주도의 기존 「핵무기확산금지체제」와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이 앞으로 있을 북한·미국간의 대화와 협상에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관점화」를 통해 접근하려는 자세를 보여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국제적 문제이기도 할 뿐 아니라 남북한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문제이다. 우리에게서 미

국의 군사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 못지 않게 남북한의 군축과 동북아의 비핵화도 중요하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장기적 비전은 먼저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sup>15)</sup>를 바탕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억지하며, 나아가 동북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비전은 장차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자간 안보기구를 우리가 동북아의 비핵지대화<sup>16)</sup> 및 군축을 위한 기구로 활용한다는 전략적 인식과도 접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번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 접근자세는 북한의 NPT 체제 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압력방안이나 기술적 묘안을 도출해내는 데 있다기보다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로써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는 기존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의 극복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

15)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 특히 여타 나라와 미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이호재, “한반도의 핵논쟁과 비핵지대안,” 이호재 편, 「한반도 군축론」 (서울: 범문사, 1989), pp. 292~312.

16) 외국의 일부 학자들도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기반이 이미 조성된 것으로 보고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멜 거토브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미·일·중·소 등 4대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다자적 구조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①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였다. ②일본은 비핵 3원칙(three non-nuclear principles)을 유지하고 있다. ③중국은 1992년 3월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할 때, 「비핵지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되풀이 천명하였다. ④러시아는 (적어도 고르바초프 시절 그의 1986년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원칙을 지지한 바 있다. 아울러 거토브는 이러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포럼 형성은 일본과 남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Mel Gurtov, “The New World Order and US Policy Toward Korea,” A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Trilateral Relations Among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May 31~June 2, 1992, p. 22.

접근의 출발점으로 삼을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전제들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간에 충분한 신뢰상태에 도달하여 남북한의 핵재처리시설 보유가 평화적인 민족적 통합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서 1991년 12월 31일 공동 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남북한 어느 쪽도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이 선언의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핵사찰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영변 핵재처리시설의 건설목적 및 1991년 12월 31일 이후 계속가동 여부, 이 시설로부터의 플루토늄 생산 및 은닉 여부를 비롯, 북한의 핵활동 전반의 내용과 의도에 대한 미국, 일본 등의 정보분석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 1992년 봄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은 그간 한·미 양국이 1976년 이후 실시해 온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전제로 이루어진 성격이 강하다. 북한이 IAEA의 임시사찰을 수용하고 있던 상황인 1992년 10월 한·미 양국이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현재 남한을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외국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의 의의를 재검토하고 그것이 갖는 역기능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또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다는 「핵우산」의 군사적·정치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재검토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정책은 비핵국가인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남한보다 우

세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군사력의 일방적 우세를 지적하는 과거 한·미 양국의 군사력 균형 평가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우리는 남북한 어느 쪽도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도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군사전략을 채용하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성실한 핵사찰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핵선제 사용가능」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유사시 한반도에의 핵무기 반입 및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미국측의 군사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북한의 핵사찰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미국 내부에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정책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고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대응을 허용하는 성급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은 북한의 성실한 핵사찰 수용을 전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의 대화와 협상의 원칙이라고 하겠다.

### 3. 대미외교 방향

보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과제는 북한의 NPT 탈퇴선언 철회의 기본환경을 마련하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방안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 목적과 조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의 주장들과 미국의 현상유지적 군사정책들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가능한 최대한의 거중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러한 거중조정역할의 전제는 북한, 미국의 입장과 그 간격의 해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정책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Ⅲ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미국의 세 가지 외교방향-북한의 핵무기 개발의지 기정사실화, 대중국 압력회유, 대북한 압력 강화를 위한 미·일 공조체제 강화-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더디게 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남북한의 자주적 역할 확대에 역기능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견조정역할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미국 정부안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의지에 대하여 정보분석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미국정부에 대하여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공동모색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군사적 행태가 제기하는 위협을 과장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동정보분석 노력을 강화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의 필요성,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정책의 실효성과 그 역기능에 대한 한·미간의 공동의 실무적, 학문적 토의와 연구의 공간을 확대한다.

셋째, 남북한의 정치적 대화와 경제 및 비경제분야 교류·협력을 철저하게 북한 핵문제에 연계시키는 자세를 지양하고, 국제적 핵사찰과는 별도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등과 같은 남북간 대화채널을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이 축소되고 우리 정부 스스로를 북한과의 의사소통으로부터 소원시킬수록 우리 정부가 미국

과 북한간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와 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유엔에서의 한국 정부 외교도 미국과의 협조체제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을 유엔에서 연장시키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유엔에서의 남북한 접촉과 대화의 영역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엔 외교를 변화시켜야 한다.

넷째, 한반도 핵문제의 성격과 바람직한 대응방향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대화와 논의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혁은 특히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사고와 논의태도에서도 확산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언론매체는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과정에 대한 자주적인 접근을 지지하는 한국내 여론이 있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의 하나이다. 이 채널에서 보다 다양하고 광범한 의견수렴기능이 활성화될 때, 미국이 자신의 정책을 곧 한국민의 정책으로 동일시하다시피 해 온 그간의 관행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한 변화가 없는 한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간의 의견조정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은 지극히 협소할 수 밖에 없다.

## V. 맺는 말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의 NPT 탈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감수하면서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배경에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

이며, 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

이 문제들의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오늘의 이 사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재발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적 통합의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는 새로운 계기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핵문제 대응이 북한의 NPT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압력수단의 모색에만 집착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 핵사찰이 미국의 기존 입장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한관계 개선은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태 해결과정을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독립적인 사고와 전략의 기준을 찾고 이를 의연하게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에게 천명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동반자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어야 하며, 그만큼 한국 정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양한 경로와 외교적 행동을 통해서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인들은 북한이 경제난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핵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군사주의적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시설 건설이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진정 핵에너지 개발을 이러한 방향으로만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수용하고 이를 관련국들에게도 촉구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보다 열린 호혜적 차원에서 조속히 일단락짓고, 남북간 핵의 평화적 이용의 전제가 되는 남북상호사찰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진전을 재촉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북한 역시 더욱 노력하여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함으로써 핵무기의 군사적 이용의 배제와 핵재처리시설 건설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재처리시설을 존속시키는 가운데 핵의 군사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조치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물론 「비핵화 공동선언」이 남북한 공히 핵재처리시설 건설을 금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다.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처해 있는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핵재처리시설 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금지한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1993년 들어서 「핵주권」 개념과 결부되어 한국 학계내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핵재처리시설이 유사시 핵무기 제조를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상호불신의 소지를 없애고 남북간 평화정착 분위기 마련을 위해서도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재처리시설을 남북한이 보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미 이 시설의 보유를 배제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인 형태로 보여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남북간 합의 실천을 통한 신뢰구축 차원에서도 유익할 것이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핵재처리시설의 존치로 얻는 에너지문제 해결 등의 경제적 이익보다 핵재처리시설 건설을 한시적으로 유보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 신뢰구축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오늘의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세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의 기존 정책 유지를 골간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강화 중심의 정책노  
 선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응자세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시  
 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대  
 하여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취지에 보다 철저한  
 자세를 보일 것을 권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이 에  
 너지문제 해결이라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시설들이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 이후 가동을 중지하였다는 북한 정부의 입장  
 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영속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기존 군사정책의 골간들의 시정을 촉구하는 한국내 통일운동의 논리는  
 북한이 핵재처리시설문제에 대한 보다 명쾌한 해명을 제시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국제정치와 본질과 관련하여 유토피아와 현실의  
 균형을 강조한 에드워드 카(Edward H. Carr)의 충언을 재삼 상기하  
 게 된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한국 민  
 족주의의 통일논리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실존이라는 엄중한 현  
 실과 그 현실이 쉽사리 변화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의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민족주의는 그러한 현실의 변화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방법론을 모색하여 왔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에서 이 같은 현실과 유토피아의 모순과  
 간극을 메우는 데에는 미국의 현상유지적 군사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  
 식과 그 시정의 요구와 함께, 그러한 미국의 현실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북한 민족당사자들의 자기성찰과 자기변화의 노력이 절실히 요  
 청되고 있다는 것을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討 論

- 司 會：金 達 中（延世大 教授）
- 討 論：李 相 禹（西江大 教授）  
李 瑞 恒（外交安保研究院 教授）  
吉 烜 宇（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빈 면

## 討 論

김달중 교수(사회): 이 자리에는 남북한문제, 통일문제, 한국외교정책, 국제정치에 대한 사계의 전문가가 많이 참석해 주셨다. 이는 오늘 학술회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우리는 분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원론적 상황에 번민해 왔으며, 이 이원론적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진력 노력해 왔다. 그러나 통일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민족의 평화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순간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토론하게 될 북한의 핵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7년 남짓하면 21세기에 진입하게 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면서 서로가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때에 아직도 우리는 통일이라는 문제와 이 땅의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많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오늘의 상황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향후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에 있어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 내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간 한국에서는 남북한문제, 핵문제, 그리고 군비통제에 대한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오늘 이 회의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안보상·전략상 문제 및 핵문제 자체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타개의 방법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핵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전세계

를 상대로 하는 세계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주변 4강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핵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의 토론의 말씀이 있겠다. 회의 시작전의 주최측 안내말씀대로 고려대학교 이호재 교수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 박사가 대신 토론해 주시겠다. 오늘 나오신 이상우 교수, 이서항 박사, 길정우 박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전략전문가이며 국제정치·외교정책분야 전문가이므로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우 교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21세기 대통령위원회 위원장, 외무부 외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 교수는 전략·군축·해양문제 등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자이다. 길정우 박사는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세 분의 지정토론자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다.

이상우 교수, 이서항 교수 그리고 길정우 박사의 순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각각 약 10분 이내의 지정토론과 이에 대한 발표자의 간략한 언급을 듣고 이어서 전체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이상우 교수부터 말씀해 주기 바란다.

**이상우 교수(지정토론):** 본인은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북한 핵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토론도 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관련분야에 전문가가 별로 없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최근 새로 공부하고 돌아온 분이 많아 이제 든든해졌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특별히 논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는 견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보는 견해를 추가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인식을 전제로 하여 어떤 사안에 대해 행위를 선택하는 결정이다. 인식이 달라지면 그것에서 나오는 결정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즉 정책은 목표와 의지, 환경인식,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문에 있어서 인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언론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으며, 특히 목표와 의지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북한 핵에 대한 정책 목표가 북한 핵을 제거하는 그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으로 족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의지-의지란 어떤 것을 추구할 때 감수하기로 마음먹은 희생의 정도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발점으로서의 상황인식에 관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견해가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인식에서 출발하면 어떤 정책으로 가는가 하는 그러한 차이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선 본인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상황인식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조

금 전 이삼성 교수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나타난 자료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심증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그렇게 보고 있다. 출발이 다르니까 아마 결론도 달라지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루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도 보고 자료도 보았지만 이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없고 상황증거로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더욱이 상황인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두번째 문제는 북한이 만일 핵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 했을까 하는 인식문제이다.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견해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목적설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목적설이다. 군사목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에서 군을 책임맡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수적으로 보아서는 북한이 우세한 재래식 병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남한보다 군비를 시작한 것이 약 15년 앞서고 있으며 -북한은 1960년대 초에 시작한 반면, 우리의 울곡계획이 본격화된 것이 1970년대 중반이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무기가 우리보다 15년 뒤져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군비 증강 초기에 도입했던 무기를 모두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할 만한 여력이 없으며, 북한에게 선택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위수단으로서의 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군사목적설이다.

군사목적설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다면 보유하라고 방치해도 좋으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때, 우

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우려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전쟁을 결정하기가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만일의 경우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아주 줄어 들었지만—기획하는 사람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다. 한국전때에도 승산이 있다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이기지 못했다. 반전이 되어 마지막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라지기 직전의 상황에까지 몰렸는데 그 때 북한을 구해준 것이 중공군이였다. 만일 북한이 똑같은 기획을 한다면 이번에는 북한을 구해줄 수 있는 중국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중국을 대신할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 경우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전쟁결단이 더 쉬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외교목적설은 이미 직간접으로 이삼성 교수도 논문에서 이미 자세히 언급했지만, 북한이 이제 새로운 세계추세에 맞추어서 외국, 특히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3년동안 여러 가지 북한의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관계개선 의사를 보여도 미국과 일본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냉전이 종결된 이후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GNP는 미국의 큰 회사의 외형보다 작은 것이고, 인구 2천만이라고 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소위 「우는 아기」(crying baby)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문제로 많은 것을 얻었다. 북한은 핵문제를 통해 세계의 주목도 받았고, 미·일의 관심도 끌 수 있게 되었다. 이번의 NPT 탈퇴선언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요구되고 있는 조건은 간단하다. 즉 가입해 있던 NPT에서 한 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조건 밖에 없다. 북한으로서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조건을 조성해 놓고 그것으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미·일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NPT Regime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간에는 향후 점차 핵무기감축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줄여나가고, 대신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핵보유를 방지하는 핵확산금지체제를 하나의 제도로 굳혀 나가려 하고 있다. 이것이 제도화되면 다음으로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점차로 그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미국의 구상인데, 만약 여기에서 북한이 빠져나가면 그 체제 자체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한·미간의 협조·공조체제에 대해서 이삼성 교수가 잘 지적하였다. 이 교수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독자적인 시각과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지자고 주장하였다. 본인도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이다. 다만 출발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도 자연히 조금씩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본인이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미국보다 너무 약한 것이 같다.

북한의 핵무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장에 북한이 핵을 하나 가졌는가 아닌가 하는 핵보유 유무가 초미의

관심인 반면, 미국에 있어서는 핵확산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 만일에 북한이 대량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일만 안한다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졌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하나만 가져도 큰 문제가 된다. 즉 미국과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에 대해 가지는 관심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핵무기를 가져도 남을 주지 말아라”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양국간의 입장이 오히려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제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반대로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도 무방하다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다. 모두 좋은 이야기이지만 역시 전제가 다르면 내용도 달라진다. 과연 우리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팀스피리트의 영구 중단 등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모든 양보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목표와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행위와 연계되지 않은 일방적 양보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대해서 소위 소극적 제재(negative sanction)가 있을 수 있고 적극적 제재(positive sanction)도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북한을 구석에 몰아넣고 위협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모든 것

을 양보하기만 해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반드시 북한이 핵무기를 확실히 제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한다는 조건하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핵문제를 따로 떼어내어서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정책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통일의 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본인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간에 교류를 증대하며, 점차적으로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부터 통합을 추진하고, 이후 정치통합을 이루는 이른바 점진적 평화통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살리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 민족을 죽이는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문제에 관한 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분의 견해를 옳다 그르다 평하지 않겠지만, 기본 틀이 같더라도 흐름에 있어서 몇 가지 대목, 특히 상황인식-우리가 불확실한 자료를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인식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을 본인과 같이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만을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다.

사 회: 그러면 두번째로 이서항 박사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다.

이서항 교수(지정토론): 이 토론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5월 12일 오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한 핵문제 결의문에 채택되었다. 한국이 2년전 유엔에 가입할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향후 유엔 외교에서 북한 문제가 한국 유엔 외교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실지로 유엔에 가입한 초창기인데 북한문제로 온갖 정

열을 쏟아야 하는 불행을 맞고 있다.

전성훈 박사가 북한과 IAEA와의 관계를 상세히 언급했지만, 특히 IAEA가 4월 1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취한 결정은 다섯 가지의 첫번째 기록을 가지고 있다. 첫째, IAEA가 북한을 핵사찰 불이행국(Non-Compliance)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북한이 IAEA의 첫번째 핵사찰 불이행국된 것이다. 둘째, IAEA가 유엔 안보리에 회원국의 핵문제를 상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셋째, IAEA가 회원국의 비공표 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은 북한이 처음이다. 넷째, IAEA가 당사자가 아닌 다른 회원국의 정보 능력을 이용하여 회원국 보고내용상의 불일치를 발견,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이 IAEA에 제출한 보고서와 IAEA가 채취한 샘플간의 상당한 불일치를 발견하여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이다. 이 불일치를 발견한 것은 미국의 정보능력을 이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한 측면도 있겠지만, 하여간 IAEA가 다른 회원국의 정보능력을 이용하여 한 당사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NPT 가입국 157개국 가운데 NPT를 탈퇴한 나라는 북한이 처음이다. 유엔에서 대북한 결의가 채택된 시점에서 향후의 사태진전에 따라 몇 가지 더 새로운 기록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NPT 탈퇴를 선언한 후 번복해서 재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성훈 박사의 발표에 대해 논평하겠다. 전 박사의 논문은 주로 향후 북한 핵문제의 전개방향에 대해 전망하였는데, 이를 미·북한 협상 성공시와 실패시 두 가지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이 문제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이 핵문제의 당사자인데 한국이 취해야 할 일을 중요

하지 않은 요인, 즉 중국과 한국을 같은 맥락에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다. 즉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대북한 협상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 박사는 이 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협상문제로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한국이 할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해야 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NPT 탈퇴 등 여러 가지 돌발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국제정치의 대국적 상황, 즉 현재 국제정치가 구조적으로 탈냉전흐름으로 있는 상황을 거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도 있을 듯 하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가 이렇게 되도록 그 이전에, 즉 지난 1~2년 동안 한국 정부가 했어야만 했던 일은 과연 없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992년 핵문제와 경협문제의 연계 등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남북간 대화 자체도 재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불가능하지만, 지난 몇 년동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향후 남북간 협상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은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 박사는 논문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이 북한의 NPT 탈퇴선언의 결정적 계기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나치게 팀스피리트 훈련에만 집중해서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제법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본문 각주 1번에서 START II의 경우 미·러 양국이 2003년까지 전략핵

탄두 수를 현재 보유량의 1/3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대러 경제원조 제공시 이를 2000년까지로 앞당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가입’이라는 말은 제 3자가 조약문의 인증절차, 즉 서명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그 조약의 절차조항에 따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가입’이란 대체로 조약이 비준과 발효가 끝난 다음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발효단계에 있지 않은 CWC와 관련하여 ‘가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대신 ‘서명’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이삼성 교수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교수는 진보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진보적 시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각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특히 대응 방안을 논의·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시각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교수의 진보적 시각은 발표문중 “북한의 핵개발이 곧 핵무기의 개발은 아니며, ...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인식이다”라는 문구에서 간명히 요약되어 있다. 이 교수는 핵무기 개발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 결정의 발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교수는 또한 북한의 핵개발 동기가 미국의 핵억지와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간의 갈등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1970년대 말부터 제기된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그 이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핵억지와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간의 갈등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 교수의 주장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군의 핵억지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북한이 상황을 이렇게 전개시켜 왔다는 이 교수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된 동기도 최근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즉 권력계승기의 북한내부 문제와 결부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다.

둘째, 이 교수의 진보적 시각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진을 북한의 이익을 대변한 합리적 결정으로 보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인식을 한 점은 없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동기와 관련해서는 이상우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목적설과 외교목적설이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하는 데 있어서 북한 내부의 잘못은 없는지를 같이 지적해야 이 교수의 진보적 시각도 힘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핵무기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핵보유국에 도전한다든지, 또는 핵무기에 도전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즉 1970년대 초 중동전의 경우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에 도전한 것도 핵무기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의 경우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핵무기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베트남이 미국에 도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대응방안에서 미국의 핵억지전략을 설명했는데, 향후 전개될 전세계차원의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

인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1995년 NPT 재검토회의가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고, 이미 미국에서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다. NPT 재검토회의와 미국의 전략을 고려,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 회: 다음으로 길정우 박사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다.

길정우 박사(지정토론): 이서항 교수가 언급한 보수·진보의 문제는 현재의 핵문제를 통일과정속에서 이해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입장의 차이를 보수·진보로 얘기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철학 차이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였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 온 것이 정확히 20개월이 지난 것 같다.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 직후 본인은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즉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 의지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증거와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공식발표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가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듯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혀 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 완전히 핵개발을 완료했다고 모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보다는 다행스럽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도 북한 핵문제를 심각하게 20개월동안 보아 왔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도 정말 심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다행하다고 생각한다.

3월 12일 직후 다행하게 생각하던 본인 자신이 사안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 미·북한간의 접촉, 그리고 중국의 중재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는 이 즈음 상당히 우울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이 6월 12일을 시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모든 언론의 보도나 정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6월 12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의 본질, 북한의 핵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과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 핵문제를 통일과정속에서 이해한다고 할 때 그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 핵문제의 본질 및 사찰의 대전제와 관련해 말하겠다.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 개발 의지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핵문제에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현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핵문제와 관련된 정책목표가 있다면,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nuclear capable)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1974년 인도가 지하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NPT에 가입도 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북한 지도부가 보고 있는 일차적인 핵무기 개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어떠한 엄격한 사찰체제-IAEA에 의한 특별사찰체제이든, 잘 만든 남북한간의 상호사찰체제이든간에-라고 해도 북한 지도부의 그러한 의지 자체를 완전히 포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본인이 이 문제를 보는 대전제이다.

다만 노력에 따라서는 그러한 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개발계획을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남북한과 미국간의 문제에서 본 북한의 핵문제이다. 북한 당국이 누차 지적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은 한반도의 핵문제라는 것은 시작부터가 한·미·북한간의 문제였고, 그 과정도 그러하였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도 한·미·북한간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사실은 이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한·미간에 논의되는 사안들이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의 여러 가지 제안에서 드러나듯이 결국은 남북한간의 중장기적인 발전과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왔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기본적인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대전제를 놓고 볼 때에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한·미간의 논의·합의 사항이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관계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삼성 교수의 발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책을 보는 우리의 입장과 관련, 한 두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철저하게 하나의 음모(conspiracy)라고 보기 시작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이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본인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음모설로 보기보다는 미 행정부가 우리의 문제, 한반도문제 일반에 대하여 둔감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인 예로 이삼성 교수도 지적했지만, 지난 한 달동안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보인 유연한 대응태도에 대해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스카시 사령관과 애스핀 국방장관의 발언을 언급했지만, 본인이 이해하

는 그러한 언급이라는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메세지이며 무엇보다도 미국의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타부처-CIA가 되든 국무부가 되든 국방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국방부 나름대로의 분석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결국 미국내에서 터져 나오는 언급을 한국 정부나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 전달되는 메세지가 달라지는 것이며,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의 음모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 통일과정속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 전개를 해 볼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리고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례를 들어 우리가 맞이할 상황이-너무 극단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핵개발 능력이 있는 북한과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해 이미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안보를 보장받는 남북한간의 공존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보는 국가의 사활적 이익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물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 회: 세 분의 지정토론자의 논평이 있었다. 여러 가지로 좋은 토론을 해 주었는데, 두 분 주제 발표자의 시각에 어느 면에서는 대단히 균형을 맞춰 주기도 하고, 발표자의 시각과 다른 시각도 제시해 주었다.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주제 발표자의 발표내용과 중요한 부분

에 있어서 다소의 시각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두 분 발표자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다.

**이삼성 교수:** 세 분 토론자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우선 이상우 교수의 지적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덧붙이고자 한다. 본인도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제기하는 협상은 북한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상우 교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는 옳바르지 않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이 핵무기 개발로 발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혹을 제거하는 데 충분히 협조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 이상우 교수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의혹을 제거하는 데 충분히 협조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위해 군사적 행동과 평화적 대화·협상간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군사적인 행동은 통일과정은 물론이고 평화공존에도 위협이 되는 예측불가의 상황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기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이 그러한 핵개발 의혹 제거에 충분히 협조적이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NPT 탈퇴를 번복하고 핵사찰체제에 복귀할 때 미국과 한국 등 관련당사자들이 기존의 냉전체제하에서 확립하였던 군사정책

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어야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변화가능성 또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안전보장, 사활적 이익, 그리고 대외관계 개선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협상할 수 있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비제로적(Non-Zero Sum)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우리 나름대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어떤 경우든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확실할 때에는 최악의 상황(worst case scenario)을 가정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이상우 교수가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상황이 불분명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이에 대비한 전략을 추구할 때, 융통성있는 고려를 배제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현실화시키는 역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불확실할수록 여러 가지 대안을 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이상우 교수는 한국이 미국보다 핵문제에 대해 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미국이 더 확고한 입장에서 있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목표와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확고하지 못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 의혹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 무엇인가를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목표를 전제한 수단과 노선의 선택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서향 교수의 논평과 관련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서항 교수가 진보적 시각의 존재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서항 교수는 본인의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듯 하다. 본인은 핵주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남북한이 재처리시설을 갖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 일이 한 번도 없으며 그렇게 이야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핵재처리시설도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서로 합의에 수정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의 평화적 문제해결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사찰체제를 가능한 최대한 완전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상대방의 주장과 어느 선에서 타협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체나 핵재처리시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본인이 쓴 글에서부터 「안보의 비핵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핵주권을 주장하며 약소국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 핵주권론자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사 회: 다음으로 전성훈 박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전성훈 박사: 좋은 지적에 감사한다. 아는 범위내에서 대답을 해 보겠다. 먼저 이상우 교수의 언급과 관련,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북한의 핵보유 여부에 대한 상황

인식과 관련, 북한의 핵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능력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핵개발 의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너무 집착해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평가를 등한히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향후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접어두고, 정보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기초해 대북한 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논문에서 지적한 대북한 양보조치는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핵사찰을 수용함과 아울러 「비핵화 공동선언」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핵의혹의 완전한 해소와 관련, 설혹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 들이고, 5MW 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여 북한이 IAEA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북한의 핵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집착할 경우 핵의혹의 해소는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는 남북한간 이해증진을 통해 북한 스스로가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날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서항 교수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논문 주제가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과거의 문제에 비추어 우리가 반성할 점은 없는가라는 이서항 교수의 두번째 지적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북한 핵문제를 너무 조급히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

각을 가지게 된다. 만약 1992년 3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가동되었을 때, 한국이 특별사찰문제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고집하지 않고, 남북한간 상호사찰이 핵시설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더라면, 핵문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보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상 상대인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 회: 그러면 이제 전체토론을 갖기로 하겠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2분 정도로 언급해 주면 고맙겠다.

이재호 기자(세계일보): 우선 핵개발이 군사용이나 평화적 목적이냐 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해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①북한이 1985년 NPT 가입 이후 6년이 지나서야 핵안전협정에 가입한 점, ②영변 핵시설에 송전시설이 없는 점, ③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흑연감속냉각로가 양질의 플루토늄 생산에 용이하다는 점, ④북한이 IAEA에 제시한 90g의 플루토늄 샘플을 분석한 결과, 1989~91년 동안 추출된 것이며, 따라서 이외의 기간에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보유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 그리고 ⑤북한 핵시설 위성사진에 대한 분석 결과 1987~88년 동안 50~70여회의 고풍실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핵개발이 군사적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핵재처리시설 보유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이 있는 듯하다. 에너지 자국화문제를 고려해 볼 때, 핵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속중식로 개발, 핵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도 재처리시설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핵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의 평화적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안보적 측면에서만 이를 고려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 핵정책과 관련, 우리나라에는 일관된 핵정책이 없다고 생각된다.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장단기 정책이 없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만 주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명영 교수(성균관대):** 본인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두 발표자의 시각과 관련하여 본인의 관점이 채택될 여지는 없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음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전성훈 박사는 외교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였거나 보유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라면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언급할 때에는 이를 구분해서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과 관련하여, 본인은 북한이 99%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김일성의 발언에 기초한 판단이다. 김일성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핵개발 의도가 없으며 핵을 보유하고 있지고 없다고 언급해 왔다. 김일성의 지난 50년 동안의 발언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핵개발 의도가 있으며,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핵과 미군철수를 맞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1985년 12월 북한이 NPT에 가입할 때 발표된 북한의 외교부 부부장의 성명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삼성 교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우리 정부를 초조하게 만들고 일을 그르치게 할 뿐이다. 이 교수는 핵문제 해결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또한 이 교수는 우리가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 같은데 지난 50여년간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북한을 유도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유도를 받아 왔다. 북한의 핵시설을 탐지한 것도 미국의 위성이며, 우리에게 이를 탐지할 능력도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또한 이 교수는 북한의 중국식 체제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1993년 3월 「근로자」에 기고된 김정일의 논문을 참조해 볼 때, 이러한 입장은 북한을 너무 모르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인의 이러한 관점이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 회: 오늘 이 자리는 두 분 발표자의 논문을 심사하기보다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공통 과제로 삼아 토론의 바탕을 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분의 주제발표에만 국한되지 말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바란다.

일반토론자: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인은 정부가 「기본합의서」를 채택할 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왜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북한은 핵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핵개발을 포함하여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 회: 활발한 토론에 감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지적에 대한 주제발표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겠다.

전성훈 박사: 이재호 기자의 의견과 관련, 첫째, 핵주권론의 핵심은 핵무기 보유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에너지 확보 및 경제성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상 이점 등을 이유로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핵주권론이 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핵주권에 대한 논의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대다수 과학자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는 미국과 CIS에서 핵무기 폐기 등으로 플루토늄의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가 사용하는 우라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은 재처리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본다.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서독과 대만이 중국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중국과 논의하는 데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중국과의 협의를 거쳐 중국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은 우리가 꼭 재처리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핵재처리시설 보유를 위한 조용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정부에 장단기 핵정책이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비핵화 공동선언」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남북한 모두 핵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때, 핵재처리시설 보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핵보유는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핵화 공동선언」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사 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어느 일방이 핵개발에 성공한다면 타방도 결국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미·소 대립속에서의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이론에 입각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다. 남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남북한은 핵균형에 가장 중요한 제2차 핵공격능력을 보장할 방법이 없으며, 미·소와 달리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반도에서는 조기경보도 불가능하다. 이 경우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우려한 핵 선제공격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핵보유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삼성 교수: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내용중에 혹시 오해의 부분이 있을지 몰라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이재호 기자는 본인의 논문이 북한에 핵개발 의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본인은 북한의 핵개발이 핵무

기 개발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다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핵주권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은 군사용이고 남한의 것은 핵주권에 입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한다면 양자간에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는 재처리시설의 보유를 유보하면서 공통 분모를 마련,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정일의 논문에 관한 이명영 교수의 언급과 관련, 본인은 김정일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거나 또 기존의 정권유지의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려는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오직 핵개발만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는다면 스스로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의 외교적 행태나 남북한관계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보면 어느 정도 국제적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해 온 측면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고립주의적 측면을 포기하고 국제주의적 노선을 자신들의 보다 합리적인 체제유지의 대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또 그러한 인식위에서 남북한간 경제공동체를 형성,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북한의 국제주의적인 경향·요소를 고무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핵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백상창 박사(한국사회병리연구소): 이명영 교수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간 심리구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김일성이 사용하

는 방법은 다기능의 원칙(principle of multi-function)으로 한 가지 일로 대여섯 가지의 효과를 노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5년전 김일성 사망설이 있던 때에도 잘 나타난 바 있다. 이 때에도 김일성은 일곱 가지의 효과를 얻었으며, 한국은 완전히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말았다.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서도 다기능의 원칙을 노리고 있다. 김일성이 핵을 가지려는 의도에는 동반자살과 같은 것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일성의 이러한 의지는 결코 민족적 양심에 호소하거나 양보를 통해서 좌절시킬 수 없으며,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줄 때에만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재호 기자(세계일보): 전성훈 박사가 핵재처리시설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재처리시설의 경제성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

핵공학자들은 원자로가 10~20기 정도면 재처리시설의 경제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 쌓여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핵화 공동선언」시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은 한·미 원자력상설공동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핵농축재처리시설을 보유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증액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근접한 기술 개발이나 에너지 개발 등 순수한 평화적 이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교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5년 NPT 가입시 가입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핵의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NPT 가입시 이러한 정책이 전혀 없었으며, 전례없이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포기하면서도 아무런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도 없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증액이 없이 어떻게 2000년대에 가서 재처리시설을 보유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소모되는 것이고, 10~20년후 가격도 상승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외교 무기화될 것인데 그때 가서야 다시 개발하자는 것은 핵정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사 회: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자와 발표자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길정우 박사: 우리가 미국의 의사대로 따라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미국을 통해 북한 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미·북한간 참사관급 접촉 내용도 미국을 통해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무작정 미국의 입장을 추종한다고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한 예로 한승주 외무장관이 1993년 3월 말 방미후 우리의 대북 유화책 5개항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의 외무장관이 미 국무장관과의 회의 직후에 한국의 입장을 미국측에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미국내에서도 북한 핵개발 능력이나 의지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서항 교수: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향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문은 불이행시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취해야 할 단계가 많은 것 같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삼각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유엔, 미·북한, 남북한의 삼각구조 내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삼각구조 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이후 경제제재조치 등과 관련하여 한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삼성 교수:**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미·북한간의 의견조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정책이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기능에 대한 진지하고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언론에서조차 미국의 군사정책은 양보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세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간에 평화적 핵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사찰체제를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상호사찰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평화적 타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상호 유연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군사정책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과정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민간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서 자주적인 입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 회: 오늘 두 발표자께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성실하게 연구한 논문을 발표해 주셨다. 또한 이러한 발표에 대해 중요한 다른 접근방법도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진보·보수의 두 시각을 모두 고려하여 모두의 식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주변 동북아 구조속에서 그리고 유엔과 IAEA까지 참여하는 복합구조속에서 동태적으로 핵문제가 다루어져 나갈 것이고, 이와 함께 남북한관계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방국과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시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어느 한 두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다. 발표자, 토론자 및 회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第 8 回 國內學術會議  
— 北韓 核問題：展望과 課題 —

日 時：1993. 5. 12 (수) 13:30~18:00

場 所：타워호텔 (본관 1층 Lex Room)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 會 辭：李 秉 龍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 14:05~14:45    主 題 發 表
- 司 會：金 達 中 (延世大 教授)
  - 發 表：全 星 勳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北韓 核問題의 現況과 展望”  
李 三 星 (翰林大 教授)  
“北韓의 核問題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 14:45~15:00    Coffee Break
- 15:00~17:00    討 論：李 相 禹 (西江大 教授)  
李 瑞 恒 (外交安保研究院 教授)  
吉 烜 宇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17:00~18:00    다 과 회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 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안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  
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  
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 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  
으로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論叢〉

統一研究論叢，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第1卷 2號(1992.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資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

北韓 核問題：展望과 課題

세미나시리즈 93-02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232-4726, FAX: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267-3956

印刷日 1993年 5月 日

發行日 1993年 5月 日

---

---